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안) (2022~2026)

2021. 1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Part Ⅰ] 기본계획 개요 ····· 1

1. 기본계획 개요 ····· 2

2. 기본계획의 수립방식 및 범위 ····· 3

3. 수립경과 ····· 10

[Part Ⅱ] 영업비밀 보호 부문 ····· 11

1. 추진배경 ····· 12

2.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 14

3. 영업비밀 보호 비전 및 전략 ····· 25

4. 전략별 추진과제 ····· 26

전략 1.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전략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전략 3.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

[Part Ⅲ] 부정경쟁방지 부문 ····· 48

1. 추진배경 ····· 49

2.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 50

3. 부정경쟁방지 비전 및 전략 ····· 55

4. 전략별 추진과제 ····· 56

전략 1.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계 정비

전략 2. 집행 실효성 확보 및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Part Ⅳ] 추진일정 ····· 64

[Part Ⅰ]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개 요

1. 기본계획 개요

가 기본계획의 성격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2(기본계획 수립)

- 특허청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정경쟁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 **1차 기본계획 기간** : 2022 ~ 2026년

○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특허청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범정부 종합전략 수립**

○ 기본계획의 방향에 따라 **연도별**로 세부 추진계획인 **시행계획* 수립**

* 특허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 요청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2제2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및 대응·실적**, 이에 대한 **분석·평가**
-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 **법·제도의 개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사항**
- 부정경쟁방지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방안**

나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

□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규정과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

○ '61년 법 제정 당시 부정경쟁행위만 규정하였으나, '91년 법을 개정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조항을 포함

- 경쟁자의 비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 보호를 추가

2. 기본계획의 수립방식 및 범위

가 수립방식

□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과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고,

○ 영업비밀의 보호(제3장)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제2장)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는 등 각각을 구분하여 취급

□ **기본계획 내용**의 **일관성·완결성** 확보를 위해 동 기본계획을 **영업비밀 보호(part 2)와 부정경쟁방지(part 3)로 구분**하여 **수립**

나 영업비밀 보호의 개념 및 수립범위

1) 영업비밀 보호의 개념

□ **(보호대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되는 **비공개 정보**

○ 설계도면, 노하우, 생산공정과 같은 **'기술정보'**와 고객정보, 원가정보, 사업계획과 같은 **'경영정보'**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

* 품종 개량된 '씨앗'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비밀로 관리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18, 수원지방법원)

○ 이는 WTO TRIPS(지식재산권협정), 美 영업비밀보호법(UTSA, DTSA), EU 영업비밀보호지침, 日 부정경쟁방지법 등 **국제적으로 일치**

□ **(침해행위) 타인의 영업비밀**을 ① **부정한 수단**(절도, 사기 등)으로 **취득·사용·공개**, ② **비밀유지 의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공개**, ③ **전득행위***

*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제3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구제수단)** 침해행위에 대해 **민사상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 영업상 **손해**의 **배상청구**와 **형사처벌**(비친고죄, 미수범, 예비·음모 처벌) 가능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 삭제·반환 요구 불응도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 벌칙	해외 유출	국내 유출
징역/벌금(병과 가능)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10년 이하 / 5억원 이하

2) 영업비밀과 특허와의 관계

□ **(보호방식)** 영업비밀과 특허는 **기술정보 보호**의 **기본수단**으로 영업비밀은 비공개, 특허는 **내용을 공개**하고 **독점권**(20년)을 받아 보호

○ **(특허) 일정수준 이상의 혁신**(신규*하고 진보된 발명)이 요구되고,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되면 이후 **제3자의 모방, 무단사용**은 **침해**에 해당

* 특허는 신청 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므로 영업비밀로 관리 필요

○ **(영업비밀) 대상**에 **제한**이 **없고 비밀유지 시 영구 보호**되나, **유출·공개 시 가치**를 **상실**하고, **합법적 수단**(역설계 등)의 **모방**은 **방지 곤란**

□ **(상호보완) 기업** 등은 시장환경, 기술발전 속도, 모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정보 보호 시 영업비밀**과 **특허를 조합***하여 **활용**

* (3M社 '포스트 잇') 접착제(microsphere)는 특허를 받고, 이를 이용한 접착띠(adhesive strips)의 제조방법은 비밀로 관리('13, 포스트 잇 개발자의 CNN 인터뷰)

참고 : "영업비밀과 특허를 통한 혁신 보호연구"('17, 유럽특허청)

- 유럽 내 약 20만 개의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특허와 영업비밀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특허와 영업비밀의 **상호 보완성**이 **뚜렷**
 - 컴퓨터·전자·광학제품 제조, 의약제품 제조, 화학제품 제조 등 특허강도(직원 10만 명당 등록특허 수)가 높은 산업의 경우 특허·영업비밀의 동시 활용도도 높은 편

유럽표준산업분류	영업비밀 활용	특허 활용	영업비밀 활용 / 특허 활용 비	특허강도
전체산업	52.3%	31.7%	-	-
화학 물질 제조, 화학 제품 제조	64.0%	43.8%	1.46	506.77
기초 의약 제품 제조	66.0%	61.3%	1.08	599.32
컴퓨터, 전자, 광학 제품 제조	76.9%	57.4%	1.34	890.65
연구개발	79.3%	65.3%	1.21	954.24

3) 다른 기술보호 제도와의 관계

□ (他 기술보호 제도) '06년 이후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영역의 기술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됨

* ① 산업기술보호법('06), ② 중소기업기술보호법('14), ③ 방위산업기술보호법('16)

① 산업기술보호법

○ (배경)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

* '1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전에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만 처벌

○ (보호대상) 산업경쟁력 제고와 유출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법률로 지정·고시·공고·인증)

- '공개', '비공개' 기술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경영정보는 미포함

○ (보호내용) 기업·대학·연구소 등 모든 기관의 산업기술에 대해 비공개 정보 유출 시 처벌과 함께 사전적 예방활동 다수 포함

- 부정한 수단에 의한 유출 뿐만 아니라 M&A, 수출 등 합법적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도 신고·허가로 통제하며 3개년 종합계획 수립

② 중소기업기술보호법

○ (배경) 기존의 기술보호법들이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및 지원근거 마련

○ (보호대상) 중소기업이 보유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공개', '비공개'의 기술·경영정보를 포함

○ (보호내용) '비공개'의 기술·경영정보의 침해에 대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고, 조정·중재의 권고 및 행위의 중지 등 시정권고 가능

- 기술 임치제도의 활용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홍보·교육 등 사전적 예방 활동과 3개년 지원계획 수립

③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배경)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가 필요하나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부실 관리의 우려로 제정

○ **(보호대상)**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지정·고시)

- **'공개', '비공개' 기술정보**를 모두 포함하며 **경영정보는 미포함**

○ **(보호내용)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 행정조사, 처벌, 수출 통제** 등을 포함하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방위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통해 통제

□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비교

○ **(유사점) 비공개 산업기술·방산기술**은 **영업비밀의 기술정보와 중첩**되고 **비공개 중소기업기술**은 **영업비밀의 기술·경영정보와 중첩**

- 영업비밀과 중첩영역에서 각 보호제도의 적용으로 이를 두텁게 보호

【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연관성】

▸**(판결문 분석)** 최근 5년 **산업기술 위반 형사판결** 분석* 결과 **약 54% 사건에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동시에 기소·판단**됨

* 19건(1심 기준) 분석결과, 피고 41명 중 22명(54%)이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판결의 적용 법조(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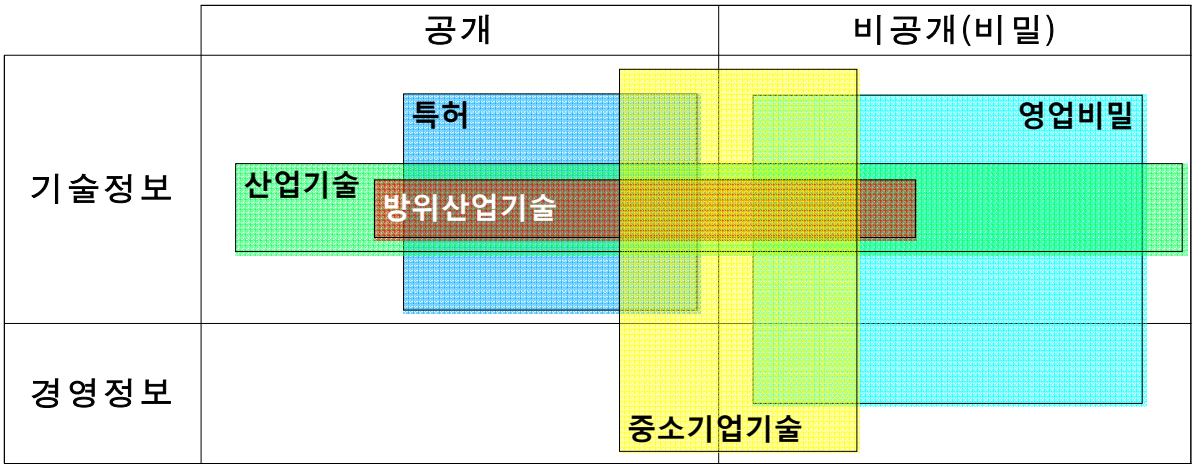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산업기술만 적용	1	3	2	9	4	19(46%)
산업기술·영업비밀	1	3	10	6	2	22(54%)
계	2	6	12	15	6	41(100%)

○ **(차이점) 입법목적**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경쟁력', '국가안보', **방산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라는 **공적 이익에 초점**

- 반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개별 기업 등의 기술·경영정보 보호라는 **사적 이익 보호**의 **측면 존재**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비공개 정보의 부정한 유출**만 **처벌**하나, **여타 법률**은 **공개된 기술**과 **수출 등 합법적 수단**에 의한 **유출도 통제**

□ 기술보호 제도 간 관계도



4)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처음 수립되는 영업비밀 보호계획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비공개 기술·경영정보'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수립

다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및 수립범위

1)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 **(의의)** 상품·영업주체 혼동 야기 행위 등 **타인의 성과를 부정하게 침해**하는 **13가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부경법 제2조 제1호)

유형	내용	관련 조항
혼동유발	성명, 상표 등을 무단 사용해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가, 나목
희석행위	타인의 성명, 상표 등을 사용하여 **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다목
오인유발	제품의 **원산지·출처지·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라, 마, 바목
대리인 부정사용	국제성을 가진 상표의 **대리인·대표자**가 상표를 **무단사용**하는 행위	사목
도메인 부정사용	타인의 성명, 상표 등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부정사용**하는 행위	아목

유형	내용	관련 조항
모방행위	타인이 개발·제작한 **상품 형태 모방** 또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	자, 차목
데이터 부정사용*	**데이터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제공 등 **부정사용 행위**	카목
초상등 무단사용*	**타인의 초상 등**을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해 경제적 이익 침해	타목
기타 성과도용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목

* 데이터 부정사용 및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는 개정법률에 포함('22, 시행예정)

□ **(구제수단)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민사상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신용회복 조치, 영업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 행위, 기타 성과 도용 행위는 행정조사·시정권고 대상 제외

- 도메인 이름 부정취득 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기타 성과도용 행위를 제외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 **(他 법령과의 관계*) 관계 법령**에서 **권리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폭넓게 보호 가능**

*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

①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 **(목적)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등록한 **상표,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형성**하여 보호

○ **(관계) 등록된 권리**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규정**

-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목적) 안전하고, 경쟁력 높은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제도, 품질관리제도, 원산지표시 제도 등 규정

○ (관계) 농림부·해수부에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권리구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 등록되지 않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출처지 오인 야기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가능

③ 저작권법

○ (목적)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

○ (관계) 저작권법은 저작물 보호를 위해 복제·전송 등의 행위 규율, 부정경쟁방지법은 구체적인 거래에서의 오인·혼동행위 규정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목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아 자유로운 경쟁질서 유지

○ (관계) 공정거래법은 경쟁자가 소수인 독과점 상태를 주로 규율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수가 경쟁하는 시장에서 경쟁질서 규율

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적) 허위, 기만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

○ (관계)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며,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목적)**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 **(관계) 하도급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등 **부당 행위** 발생 시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며,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3) 부정경쟁방지 기본계획의 수립범위

☞ **다른 법률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타인의 성과 등에 무단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수립

3. 수립경과

□ **국내외 경제환경 및 주요국 정책동향 수집·분석**('20. 11~)

○ 해외 자료수집, 산학협력단·이공계 교수·기업 등 대상 인터뷰

○ 영업비밀 침해 시 형량에 관한 양형기준 세미나('21.8)

○ 기술패권시대 정책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1.9)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향에 관한 세미나 개최('21.12)

□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출범·운영**('21. 4)

○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①기술보호, ②부정경쟁방지, ③디지털·국제협력의 **3개 분과위원회 운영**(매월 1회)

□ **'21년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실태조사*** **실시**('21.7~9)

* **(영업비밀)** 기업 1,068개사, 대학·공공연 105개 대상 조사실시
(부정경쟁) 사업체 1,250개사, 소비자 1,000명 대상 조사실시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분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정책과제 작성·제출('21. 8)

[Part Ⅱ]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영업비밀 보호 부문

1. 추진배경

◇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생존 및 성장의 핵심

○ **기업 차원**에서 **영업비밀**은 특허·저작권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함으로써 **특허·저작권** 등을 **보완**하는 역할

-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보다 유연한 기술보호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

* (美) R&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재산의 종류에 대해 설문한 결과 영업비밀 76.1%, 특허 49.4% ('21, 美 국립과학재단(NSF))

○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은 경쟁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는 것을 차단**하고 **차별화된 경영전략**을 가능케 함으로써,

- **기업이 경쟁력을 지속**하며 **생존·성장**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코카콜라는 재료배합을 영업비밀로 유지하면서 130년 넘게 경쟁력을 유지

** '19년 시작된 L社와 S社의 배터리를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은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합의로 종결('21.4)되면서 기업 영업비밀의 중요성 부각

◇ 영업비밀 보호는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발전에도 기여

○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기업의 기술·경영정보의 **대외 유출위험**을 **줄여** 기업간 **기술거래, 합작투자, M&A**와 같은 **개방형 혁신***의 **기반**을 **조성**

* 영업비밀 보호는 독점 노하우와 전문 지식의 공유를 촉진('14, 국제상공회의소(ICC))

- 기업의 자체 **R&D 투자**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혁신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은 **혁신 투자**를 **이끌어 내는데 유효**하게 작용

* 37개국 대상 영업비밀 보호강도와 경제성과 지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 외국인 투자 유입 등에서 양의 상관관계('14, OECD)

◇ 기술패권 경쟁 속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

○ **기술을 무기**로 한 **국가간 패권경쟁**이 **가속**되면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이슈**로 등장

- **민간기업**이 **보유**한 **AI·5G·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은 **민군겸용**(dual use)이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은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

- 기업의 **경영정보**(사업계획, 고객정보, 재고량 등)를 **취득**하면 **공급망 파악**과 **기술개발 전략**의 **추정**이 **가능**

○ 美·日 등 **주요국**들은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국가경제 및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

* (美)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위해 경제스파이법(EEA)을 제정하고('96), 산업스파이 색출을 목적으로 'China Initiative'를 추진('18.11)

* (日) 미쓰비시전기는 기술유출 방지 등 업무를 위해 경제안보 담당 임원 신설('20.9)

◇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정책 필요

○ **영업비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나, 국경 간 자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유출 위험도 상승**

* (韓) S社 협력사인 D社 직원 A는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하면서, S社의 핵심기술(영업비밀)을 유출해 중국 회사에 이직하려다 적발돼 집행유예 4년('18)

* (美) M社의 R&D 직원 3명이 중국의 H社로 이직하며 무전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7.6억$(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판결('20)

○ **자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경제·안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경쟁적으로 **강화**

- **우리나라**도 그간 **사후적 처벌 위주**로 **강화**해 왔으나,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어 사전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

☞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 영업비밀 보호정책 추진 필요**

2.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가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발전 과정

□ (도입 배경)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고 **해외투자 유인**을 주요 **목적**으로 **'91년 최초 도입**

○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무역협정**이 **논의***되면서 **통상마찰**을 **줄이기 위한 외부적 영향도 작용**

* '86년 韓·美 통상협상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합의하고, WTO/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에서도 선진국의 요구를 반영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

□ (그간 개선방향) 도입 이래 크게 ① **해외유출방지 강화**, ② **침해행위의 처벌 강화**, ③ **집행조직 확대**, ④ **사전예방활동 강화** 측면에서 개선

① 해외유출방지 강화

○ '97년 국내 대기업의 전현직 연구원들이 64M D램 핵심기술을 대만 경쟁사에 유출시도한 사건을 계기로 보호 강화

○ **('98 개정) 해외유출의 가중처벌**, 현직 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도 처벌*, 국가안보·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 비친고죄** 적용 등 규정

* (이전) 현직 임직원 / 징역 3년 → (개정) 전현직 임직원 / 해외유출 7년, 국내유출 5년

** '14년 개정 시 친고죄 규정을 전면 삭제하여 비친고죄로 전환

- **영업비밀 보호 내용의 비중**이 **커지면서** 법의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② 침해행위의 요건 완화 및 처벌 강화

○ **(영업비밀 요건 완화) 비밀관리의 정도**를 **'상당한 노력'**('98) → **'합리적 노력'**('15) → **'합리적 노력'**을 **삭제**('19)

○ **(처벌대상 확대) 대학·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해 민사조치만 가능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확대**('13)

○ **(벌칙 형량 강화)** '97년 해외/국내유출 7/5년 징역이던 것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해외/국내유출 15/10년 징역**으로 **강화**

○ **(손해배상액 상향) 고의침해**에 대한 **3배 징벌배상**을 도입하고('19),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분도 배상**하도록 개선('21)

③ 집행조직 확대

○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운영('10~),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경우) 침해행위 행정조사 운영('18~)

○ 특허청에 영업비밀·특허수사를 위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 신설*('19.3), 조직·인력을 확대하여 **기술경찰 출범**('21.7, 1과 47명 → 2과·1팀 58명)

* 영업비밀·특허·디자인 등 742명 형사입건, 271명 검찰송치('19.3 ~ '21.5)

④ 사전예방활동 강화

○ **(제도기반 마련)** 사후적 처벌 위주에서 **사전**에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사업 수행의 근거 마련**('09)

○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 고유의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시 보유자·보유시점 입증에 활용('10)

* 원본증명을 받은 경우 등록시점과 기재내용에 법적 추정력 부여(法 제9조의2)

○ **(「영업비밀 보호센터」 설치)** 기업·대학 등에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12, 특허정보원) → **지식재산보호원*으로 이관**('19)

* 영업비밀·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영업비밀 유출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컨설팅 및 관리시스템 보급과 피해기업 대상 법률자문, 증거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21~) 등 지원

○ **(중장기 보호계획)**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5개년)·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21)

나 주요국 정책동향

◈ 주요국은 ① **영업비밀 보호·집행 강화**, ② **외국인 투자제한**, ③ **기술 수출 통제**, ④ **인적교류 제한** 등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국가안보 관점에서 영업비밀 보호·집행 강화 및 기술이전 통제

○ **(연방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연방법원에 민사소송 가능**(기존 州법원) 및 **일방적 압류절차** 신설, **법인의 벌금상향** 등 보호수준 강화('16)

* 연방법 제정 후 영업비밀 소송 급증 : ('16) 860 → ('18) 1,399건 ('19, WIPO Symposium)

- **(집행) 중국 산업스파이**에 대한 **수사·처벌 강화**('18, China Initiative)

○ **(외국인투자 제한)** 군사·민감시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에 대해서도 **투자·M&A** 등 제한("외투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 제정, '18)

○ **(기술수출 통제)** 반도체·AI 등 14대 안보 핵심기술 지정("수출통제 개혁법(ECRA)" 개정, '18) → **경쟁국 기업에 대한 기술수출 규제**('19)

○ **(인적교류 제한)** 첨단기술 분야 中 **유학생 비자기간 단축**(5→1년, '18), 중국 군부와 관련된 연구인력의 **입국금지**(1천명 비자취소, '20)

- 정부 R&D 연구자의 외국자금 지원 은폐여부 조사(국립보건원(NIH) 54명 사직·해고, '19), 해외 인재유치프로그램 참여도 금지('19, NSF)

○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 발동('21)

* 연방정부의 사이버 안보 현대화, 정보공유 장벽 제거, 소프트웨어 공급망 개선 등

향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수출통제를 강화

○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고의침해 시 5배 배상제도**(징벌배상)와 **몰수제도**를 도입하고, **법정배상금도 상향**(5→8.5억원, '19)

-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처리, 「영업비밀보호센터」 설립 추진('20.6)

○ **(수출·투자 제한)** AI·드론 등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개인의 제재를 위한 **"수출통제법*" 시행**('20.12)

* 기존 "수출통제조례"를 법제화, 중국 대상 수출통제 남용국가에 대한 보복조치 규정

경제안전보장을 위한 조직 신설 등 기술유출 방지 노력 강화

○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과 **침해수익 몰수**, 영업비밀 침해제품의 유통행위 처벌 등 신설('16)

* **(종전)** 개인 1천만엔, 법인 3억엔 → **(강화)** 개인(국내 2천만엔, 해외 3천만엔), 법인(국내 5억엔, 해외 10억엔)

○ **(외국인투자 규제)** 외국자본이 **핵심산업* 주식의 1% 이상**(종전 10%)을 취득할 때 **사전신고**를 **의무화**('20)

* 무기, 항공, 우주, 원전, 민·군 겸용기술, 사이버 안보, 통신 등 12개 산업부문

○ **(연구인력 관리)** 유학생의 **비자발급 심사** 강화('21), 정부연구비지원 대학·연구소의 **외국자금 지원여부 정보공개** 의무화('22)

○ **(안보조직)** 전 부처에 경제안보 지시가 가능한 **경제안보상 신설**, 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경제안전보장법 제정 추진**('21)

영업비밀 보호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회원국 공동대응 강화

○ **(영업비밀 보호)** 역내 **회원국별**로 **상이한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정비**하여 "EU 통합 영업비밀 지침*" 마련('16)

* 영업비밀 정의, 적법·불법 취득, 사용·공개, 보호 방법·수준, 구제방안 등

○ **(외국인투자 규제)** 복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인수합병** 심사 시 **EU 및 관련국과 협의**하는 **제도를 시행**('20)

○ **(연구인력 관리)** **영국**은 대학원 유학생 대상, 사이버보안·항공 등 **과목수강**시 **보안검사**(Security Check) 시행('20.10)

○ **(인재 유출 방지)** **유럽 AI 과학자**들의 **미국 기업**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 유럽** 주요국(11개)에 AI연구소(ELLIS) 설립(5년간 2.2억유로 투자, '18)

다 영업비밀 보호실태

□ **(보호수준)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 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

* '21년 스위스 IMD가 평가한 지식재산 보호수준은 64개국 중 36위(중국 35위)
*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수준의 국민 체감도는 6.3점(10점 척도) ('21, 특허청 실태조사)

□ **(경제적 피해)** 영업비밀 유출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1~3%**에 이르며* **우리나라 보호수준**을 **감안 시 최대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

* 선진국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는 GDP의 1~3% (英 지식재산청('21), 美 IP Commission('17))

○ 이는 **전체 R&D 투자규모('21년 100조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

□ **(유출피해·대응)** '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11.1%가 유출 피해**를 **경험**하였고, **기업 당 평균 피해규모는 8.9억**에 이름

* 해외유출 경험은 조사기업의 3.8%, 기업 당 평균 피해규모는 24.4억('16, 특허청 실태조사)

○ **(유출자·방식) 유출자는 내부자**(퇴직자 61.3%, 재직자 16.8%)가 가장 많았고, **유출사건 중 7.6%는 외부의 사이버 해킹**에 의해 발생

○ **(대응)** 경고장 발송이 42%로 가장 많았고, **형사고소는 10.1%**, **민사소송은 8.4%**였으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도 23.5%**에 달함

-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고**(71.4%), **시간과 비용 부담**(35.7%)이 크며, **상대 기업과 관계지속**을 위한(17.9%) 이유도 영향

- **유출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는 **피해사실의 증거수집**(68.9%)과 **피해규모를 산출**하는 것(30.3%) 등으로 조사

□ **(민사소송)** 최근 3년('17~'19)간 1심 판결(연평균 98건) 중 **영업비밀 침해 인정은 7%**에 **불과**하고 **손해배상액은 62백만원**(중앙값)으로 **낮은 수준**

* 법원은 영업비밀 민사사건의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수집할 수 있는 판결문 범위 내에서 분석('20, 특허청 판결문 분석)

○ **침해된 영업비밀 유형**은 **경영정보 34.5%, 기술정보 29.1%, 기술·경영정보 혼합이 16.4%**로 나타남(나머지는 불명확)

□ **(형사소송)** 최근 5년('15~'19) 검찰이 처리한 사건의 **기소율은 약 9.7%** (국내유출 : 8.9%, 국외 : 26.8%)로 **낮은 수준**('19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은 29.6%)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영업비밀 침해 처리/기소(명) * 출처 : 연도별 검찰연감	국내	911 / 133	1,057 / 60	980 / 68	882 / 76	837 / 78	4,667 / 415
	국외	46 / 22	25 / 13	23 / 2	93 / 15	48 / 11	235 / 63
	소계	957 / 155	1,082 / 73	1,003 / 70	975 / 91	885 / 89	4,902 / 478

○ 최근 3년('17~'19) **형사 1심 무죄율은 34.5%*로 높고, 유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75.3%)가 대다수**('20, 특허청 판결문 분석)

* '18년 전체 형사 1심 재판의 무죄율은 3.41% (사법연감)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관리 미비**('21, 특허청 실태조사)

○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을 모르는 기업**이 **52%에 달하고, 전담인력은 평균 0.4명**(중소기업 0.17명)에 불과

○ 종업원과 **전직금지약정 체결은 36.5%로 저조**하고, **50.8%만 보호교육 실시,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평균 지출은 약 2천만원**

○ **영업비밀 관리지침의 보유·준수 기업은 32.7%**('20, 특허청 실태조사)

□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관리) 영업비밀**의 **인지도**가 **저조**하고, **연구 보안 예산 부족, 대학은 공공연 대비 보안활동 미비**('21, 특허청 실태조사)

○ **31.4%의 기관**만 **영업비밀의 정의·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연구 부산물**을 **개별 연구자가 임의관리**하는 경우가 **49.5%**

○ **대학의 56.6%만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공공연 90.2%) 있고, 대학·공공연의 **보안예산은 대부분 5천만원 미만**으로, 부족하다고 응답

라 향후 정책방향(보완할 점 및 고려사항)

◇ 최초 수립되는 영업비밀 보호 기본계획은 5년간의 장기계획

☞ 그간 **영업비밀 보호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 필요**

1) 그간 영업비밀 보호정책의 문제점

1 사전적 예방보다 사후적 처벌 강화 중심

○ '91년 영업비밀 보호제도 도입 후 **주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그러나, 증거확보의 어려움, 집행기관의 기술전문성 부족 등으로 무죄율이 높고 처벌도 낮아 영업비밀 유출 억제에 한계

○ 영업비밀의 특성 상 **유출되어 공개**된 경우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

- 영업비밀 보호센터 등 여러부처의 전문기관이 사전적 예방활동을 수행하나, **예산규모가 작고*** **영업비밀 보호지원의 법적근거 빈약****

* 중기부·산업부·특허청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정부의 R&D 지원예산('21년 27.4조원)의 0.03% 수준

**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설치근거가 없고 지원사업은 연구·교육·홍보만 규정(제2조의 5)

2 기업위주의 보호대책으로 대학·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취약

○ **대학·연구소**의 **기술이전, 기업과 공동연구** 등 **산학 협력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에 준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필요**

* 대학 기술이전 건수(과기부) : ('15) 4,017 → ('19) 4,818건 / '19년 정부 R&D 집행액(17.8조) 중 산학연의 공동연구과제 집행액은 22.3%(3.9조)

- 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유출도 처벌토록 법을 개정('14)하였으나, **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관리인식은 저조**하고 **정부의 지원도 부족**

* 대학은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예산·연구비 지원 등의 한계로 보안시스템 구축 어려움('21.5, C대학교 등 4개 대학 인터뷰)

○ **기업에 비해 보안인프라**와 **인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학·연구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유출 증가 우려**

* K대학 L교수는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자율주행기술 연구자료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21, 1심)

* 정부출연연 소속 A 연구원은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풍력 블레이드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21, 2심)

3 사이버 해킹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대책 미흡

○ 해킹 공격기법의 지능화·다양화로 **국내 해킹발생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최근 해외의 조직적 해킹집단 활동도 활발

* 국내 해킹발생(건) : ('14) 1,648→('16) 1,847→('18) 2,178→('20) 3,176 (연도별 경찰통계 연보)

-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역량도 낮아 해킹에 취약하며*, 대학·공공연도 해킹에 대한 대비가 부족**

* '18~'21. 8월 기간 해킹 피해기업의 91%가 중소기업('21, 인터넷진흥원)

** 연구보안 예산이 없는 대학/공공연 비율이 각각 29.6%/25.5%('21, 특허청 실태조사)

○ 그간 관련부처 **기술보호 중장기 계획**에서 **사이버 해킹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대책은 다소 부족**

4 집행조직을 포함한 부처간 연계 부족

○ **기술보호 정책·집행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결정**과 **강력한 집행력 확보**에 **한계**

* 정책 : 산업부, 중기부, 국방부, 특허청 등 / 집행 : 중기부, 검찰, 경찰, 정보기관, 특허청 등

○ 검·경, 정보기관, 중기부 등이 각자 전문기능을 수행 중이나,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의 **신속·효율적 처리에 한계***

* 검·경,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수사에, 중기부 등은 조사에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사건처리에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중

- **기술이 고도화**되고 **침해·유출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적절한 대응에 기술·정보수집·수사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

2) 대내외 환경변화

1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IoT, 센서 등을 통해 모아진 **불특정의 대량, 이종의 빅데이터**는 **디지털전환의 핵심요소**이나 특허와 같은 **권리부여 방식의 보호 곤란**

*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나 대량·이종의 빅데이터와는 차이

- **비밀로 관리된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보호**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한정제공되는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 규제('21.11)

○ **디지털전환과 4차산업혁명**은 **AI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면서 **영업비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이는 **서비스 혁신이 특허보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 기업조사(3,444개) 결과 특허, 영업비밀 보유비율은 제조기업이 각각 39.2, 33.0%로 비슷하나 서비스기업은 각각 11.3, 32.6%로 영업비밀을 선호('19, 일본산업경제연구소)

* 서비스 혁신 기업은 영업비밀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 ('17, 유럽지식재산청)

○ 한편, **AI 기술**은 **특허 획득에 오랜시간**이 걸리는 반면, **혁신속도가 매우 빨라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에 **의존**할 동기 증대

* 대기업 P社는 AI 기술의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여 AI활용 기술은 대부분(94%) 영업비밀로 관리('19년도 P社 전체 기술의 특허비중은 56%)

2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 세계 각국은 **산업정책**을 **안보정책**과 **연계**하여 **안보상 중요한 산업·기술을 특정**한 후 이들에 대한 **개발과 유출방지**를 위해 **총력**

* (美) 신규 반도체공장에 520억$ 보조금, 반도체 등 4대분야 공급망 확보전략 마련('21), (EU) 반도체산업 1,500억€ 투자(점유율 20% 목표)('21), (中) 기술자립을 위한 "쌍순환 전략"('20)

-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일·EU** 등에서는 **'15~'17년사이 영업비밀에 대한 집중적 제도 개선** 실시

○ 특히, AI·5G·반도체 등 **민군겸용의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군사적 패권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기술확보 경쟁 치열**

- **단기간 내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영업비밀 탈취 목적**의 **해외기업 M&A, 전문인력 유출,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증가 예상**

- 美·中·日·EU가 모두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품목**의 **자급률을 높이려** 하고 있어, **우리나라 핵심 기술과 인력의 유출 심화 우려**

* (EU)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는 30명 이상의 한국·일본인 고용('19)
(中) 반도체기업 P社는 국내 대기업의 고경력 엔지니어 대상 채용 진행('19)

○ 또한, **첨단기술이 유출**된 **국가·기업** 등은 **미국 등이 주도**하는 **공동연구,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성** 존재

* 노키아(Nokia)는 오픈랜 기술 표준화 협의체에 소속된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기업 리스트에 오르자 기술개발 협력을 잠정 중단('21.9)

3 사이버해킹 위험의 일상화

○ **코로나 19**는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공간'을 **'재택근무'와 '온라인 공간'**으로 변화시켰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보편화** 예상

- **재택근무**는 사무실 근무에 비해 보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되어 **사이버상**에서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증가**

* 데이터 유출사고의 약 20%가 원격근무에서 발생('21, IBM 시큐리티)

○ 메타버스, 5G,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등과 같은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디지털자료의 생성 및 보관 증가**

- **디지털자료의 온라인 이동**이 **확대**되면서 영업비밀의 사이버해킹 위험 노출도 필연적으로 증가

4 다자/양자협상에서의 영업비밀 논의 가속화

○ 양자 및 다자간 **디지털협정 추진***으로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확대**되면서 **영업비밀의 중요성 증대**

* USMCA('18), CPTPP('18), 미일디지털협정('19),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 등

- **영업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등장**하고 있어, **국내 규범**이 **강화된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

5 지식기반산업 성장 및 민군 겸용기술 확대

○ 디지털전환, 4차산업혁명,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 **첨단기술산업에 투자를 집중**

- 국가경제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

* 최근 4년간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20.1% 증가 : ('16) 19.1 → ('20) 22.9만개 ('21, 중기부)

<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

구분	미국(2014)			유럽('14~'16 평균)			국내('11~'14 평균)		
	고용 기여도	GDP 기여도	임금 프리미엄	고용 기여도	GDP 기여도	임금 프리미엄	고용 기여도	GDP 기여도	임금 프리미엄
▪ 지식재산 집약산업	18.2	38.2	46.4	29.2	44.8	47	29.1	43.1	51.1

* 기여도 : 집약산업 / 전체산업, 임금프리미엄 51.1은 집약산업의 임금이 51.1% 더 높다는 의미

(출처 : 미국 특허청('16), 유럽 지식재산청('19), 지식재산연구원('18))

○ 더욱이 **첨단기술은 대부분 민군겸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업, 연구소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집중 필요**

3. 영업비밀 보호 비전 및 전략

【 비 전 】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통한 혁신기반 구축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목 표 】

◆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호 수준 향상

*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체감도(10점 척도) : 6.3점('21) → 7.0점('26)

◆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경제적 피해 예방

* 영업비밀 유출의 경제적 피해액 : 최대 GDP의 3%('21) → GDP의 1%('26)

◆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확산

* 전체기업 중 영업비밀 유출 방지지침 준수율 : 32.7%('20) → 50%('26)

3대 전략	핵심 정책과제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1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 해소 2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생태계 조성 3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영업비밀 보호 기반마련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1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관리 2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3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방안 마련
3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	1 신속·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조사 체계 구축 2 유출 피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지원 강화 3 효과적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선진화

4. 전략별 추진과제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1-1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활용·보호수준**이 **낮고**,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전예방에 투자 소홀**

* 62%의 기업이 기술보호에 영업비밀 활용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애로사항으로 52.6%가 전문인력 부족, 45.7%가 방법론 부재를 답변('21, 특허청 실태조사)

○ 영업비밀 보호 **유관부처가 각자 지원사업 수행**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기술보호에만 집중***되어 서비스기업 등의 보호지원은 미흡

* 최근 2년 특허청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기업 110개사 중 제조업이 82개(74.5%), 소프트웨어개발 10개(9%), 서비스업 7개(6%), 도소매업 2개(1.8%) 등

□ **대학·공공연**은 특허·논문에 비해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심이 있더라도 연구비 제약***으로 관리체계 구축에 한계

* 2차전지 상용기술을 보유한 H대학 S교수는 자체 예산으로 보안설비 구축

○ 특히,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의 영업비밀 보호 강화 필요

추진과제

1 전략적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 + 영업비밀 활용의 확산

○ **연구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특허와 함께 영업비밀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론 보급·교육 및 전략수립 지원**

* IP믹스전략 :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조합하여 보호

○ **(방법론 보급·교육)** 기술분야 특성, 모방의 용이성, 경쟁사와의 기술격차 등을 고려한 **특허 + 영업비밀 활용 가이드 보급·교육**

○ **(전략수립 지원)**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의 IP믹스전략 수립지원**(예시 : R&D과제 특허전략 지원시 영업비밀 활용전략을 함께 제공)

< IP믹스전략 (예시) >

【 모방(역설계)이 용이한 기술 】 제품의 형상·구조 등 쉽게 분석 또는 유추가능한 기술	→	**특허 출원**
	→	**특허+영업비밀**
【 모방(역설계)이 어려운 기술 】 공정조건(온도·압력)과 같이 알아내기 어렵고, 비밀관리가 유리한 기술	→	**영업비밀 관리**

[참고] 외국의 특허·영업비밀 활용 기술보호 사례

- **[영국 지식재산청('21)]** 기업들이 **제품**은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공정**(기계 공정기술, 화학 제조기술)은 **영업비밀** 보호를 **선호** → **특허와 영업비밀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
- **[일본 특허청('15)]**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때, 핵심기술에 대해 **특허확보**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가 필요한 기술**의 **블랙박스화 전략 (Open & Close)** 지원

2 부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지원하는 **부처간**(중기부·산업부·특허청 등) **협업**(협의체 등 구성)으로 **효율적 예산집행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지원사업 연계)** 부처간 지원사업 **정보공유,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종합적 지원*** 제공 등 시너지 창출

* 예) 특허청 영업비밀 심화컨설팅 수혜기업 중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연계

○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술(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등) 보호 우수기업*에 부처 상호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산업부) 보안역량 우수기업, (중기부)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특허청) 관리체계 우수기업

** 예) 정부 R&D 사업 가점, 특허 등록료 감면, IP 금융 평가요소 활용 등

○ **(경영정보 등 보호확대)** 기술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업 등 비제조기업 대상**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교육 등 확대**

3 대학 · 공공연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 **산학협력이 활발**한 **대학·공공연**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보호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

○ **(비밀관리체계) 산학연 공동·위탁연구**에 참여한 대학·공공연에 **영업비밀 보호수준 진단·심화컨설팅***, **관리소프트웨어**** 지원

* 비밀관리체계 점검, 비밀등급 분류,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학생·연구원 등 교육

** 전자문서에 비밀등급 부여, 등급별 접근권한 제한,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등

○ **(전문가 파견) 활발한 기술이전, 국가 주요기술 보유** 등 기술보호가 시급한 **대학·공공연**을 선정해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파견**

- 지역별 거점(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도 전문가를 파견하여 중소기업 대상 상시 지원체계 구축

4 기업·대학·공공연별 특성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지침 마련

○ 기업과 대학·공공연의 서로 다른 설립목적과 연구환경을 고려하여 **관리주체별 영업비밀 관리지침**을 별도 마련·제공

* (日) 영업비밀 관리지침과 별도로 대학용 영업비밀 보호 핸드북 발간('15)

- 영업비밀 결정 방법, 관리방안, 체크리스트, 전직금지 약정서 등 각종 계약서, 영업비밀 침해 사례 및 판례 등 포함

5 영업비밀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확충

○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설치와 기업·대학·연구소 대상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법률지원 등 **사전예방 활동에 대한 근거 확충**

* 현재 영업비밀보호 사업은 연구·교육·홍보 등 기반구축(법 제2조의5)을 규정하고, 그 밖의 사업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조항 미입법

참고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주요사업 비교

('21년 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특허청(2,332)	중기부(7,133), 산업부(1,190)
사전예방	컨설팅	·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600) - 기업별로 법원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비밀등급 분류, 접근권한 차등화 등)	· 전문가 현장 자문(1,435) - 보안전략 수립, 보안시스템 점검, 법률자문 등 기술보호 전반에 대한 진단·자문 · (산업부)산업기술보호 보안닥터(200) - 기업의 보안 전반 컨설팅(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문서관리 시스템	· 영업비밀 관리 S/W 보급(200) - 영업비밀 보호에 특화 개발된 S/W 설치 및 지속적 서버관리	-
	보안 시스템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1,980) · (산업부) 보안인프라 구축(50)
	보안관제 서비스	-	· 기술지킴 서비스(1,718) - 해킹을 통한 기술유출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
	입증부담 완화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영업비밀 원본파일의 전자지문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보유자, 보유시점 입증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기관에 보관, 피해발생 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 ·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 제안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거래 자료를 등록·보관, 법적분쟁 시 활용
	인식제고	· 영업비밀 교육(52) · 홍보·간담회 등(221)	· 기술보호 교육 (중기부: 200, 산업부: 440) · 홍보·컨퍼런스 등(270) · (산업부)전문인력 양성(500)
사후구제	법률자문	· 유출분쟁 법률자문(30) - 피해기업 초동대응을 위한 법적 구제방안 자문	· 기술보호지원반·법무지원단(1,045) - 피해기업 법률자문, 소송지원
	증거확보	· 디지털포렌식 지원(1,229)	· 디지털포렌식 지원(100)
	소송비용 지원	· 지식재산공제 - 기업이 매월 공제부금 적립, 소송 발생 시 비용 대출	· 법률대리인·소송비 지원(385) -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 인정 시 민사소송 비용지원

1-2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생태계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기술유출의 主원인은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18, 중기부)

○ **기업·대학**의 **기술보호 교육 강화, 영업비밀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영업비밀 유출 경험기업의 50.8%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20, 특허청 실태조사)

○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 조성 필요

* 대기업 S社의 협력사인 D社의 A는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하면서, 핵심기술을 유출해 중국으로 이직하려다 적발돼 집행유예 4년 선고('18)

□ 기술·영업비밀 **보호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

○ **(실태조사) 중기부·특허청**이 각각 **기술유출**에 대한 **조사*** 실시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특허청)** 영업비밀 분쟁 실태조사

○ **(판결문)**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민·형사 판결문의 수집이 어려워** 정확한 **소송통계***, **손해배상액 추이** 등 **파악 곤란**

* 법원은 판결문 가운데 일부만 공개하고 있으며, 소송통계도 침해금지 소송만 제공하고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제공하고 있지 않음

추진과제

1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예비 기업 연구자·창업 인력인 이공계 대학·대학원생**에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회 확대**

○ **(대학교육 강화)** 지식재산 중점대학*, 신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등을 활용하여 **예비 R&D인력**에 **특허·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교육** 추진

* ('21) 3개 대학(경상국립대, 전남대, 충북대) → ('22) 4개 대학(충남대 추가)

○ **(통합교육 콘텐츠) 산업기술·영업비밀 등 기술보호**를 **포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부처공동***으로 **활용**(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게시)

* (산업부) 산업기술보호협회, (중기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 **(교육기회 확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공공·민간부문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영업비밀 보호** 내용 포함(現 영업비밀 교육과정은 없음)

2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양성

○ **특허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변리사)** 기술·법 전문가인 변리사가 **특허청 '산업재산분쟁조정'**의 **'기술상' 영업비밀 사건을 대리·상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일본은 변리사가 기술상 영업비밀·부정경쟁(상표 등 관련)의 조정·상담 업무

- **(단기)** 신규·보수 교육 과정에 영업비밀 과정을 확대 편성*

* 현재 신규 변리사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교육은 2시간 편성

- **(장기)** 변리사 선발시험 과목에 '부정경쟁방지법' 신설 검토

* 일본은 변리사 1차시험(단답식) 과목에 '부정경쟁방지법' 포함

○ **(전문가 양성) 영업비밀 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민간자격 신설** 등 검토(영업비밀보호센터 주관)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주무부처 승인으로 민간자격 운영 가능

3 영업비밀 보호 상생문화 조성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

○ **(상생협약)** 대기업-협력사-특허청간 **영업비밀보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컨설팅·교육* 등 협력사(중소기업)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

* (CEO·임원)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침해행위 발생 시 법적인 구제방안 등, (보안담당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사항, 단계적 체계구축 방안 등

○ **(대국민 홍보)** 영업비밀 유출에 의한 **피해** 및 **처벌 사례***, 해외 **이직 후 곤경**에 처한 **사례** 등에 대한 **홍보**(언론, SNS 등)

* 중견기업 S社 LED 기술자료를 대만 경쟁사에 빼돌린 임직원에 징역 1년 선고('20)

4 영업비밀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체계 정비

○ **(실태조사) 중기부, 특허청**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를 협력하여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 등록 추진**을 검토

○ **(산업별 영업비밀 활용도 조사)** 산업별 **특허와 영업비밀 활용도**를 **조사**하여 **영업비밀이 집중된 산업분야**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

○ **(판결문 DB 구축)** 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판결문 DB 구축**을 통해 분쟁현황 파악, 법 개정 사항 발굴 등 활용

* (단기)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수집 분석 →
(장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5 영업비밀 보호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기업의 중요한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정책 수립 시 기업의견 반영** 필요

○ **(민관 협의체)** 경제단체, 대중소 기업, 업종별 협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시행계획 등 영업비밀 보호정책 논의

1 – 3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법제·분쟁동향** 등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 중이나 '특허' 등에 한정

* 수출기업 등이 현지 지재권 분쟁 동향을 파악·예측하도록 관련 소송정보 제공

** 경쟁사 문제특허 분석 및 무효심판 대응, 경고장·라이선스 요구 대응 등

□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지재권 보호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국가간 지식재산 보호제도 조화** 필요

추진과제

1 해외 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지원 기반 강화

○ **(IP-DESK)** 국가별 영업비밀 침해 현황, 기업 수요 등을 분석하여 **IP-DESK 확대·개편*** 및 영업비밀 등 **지재권 전문인력 확충**

* 중국(6), ASEAN(4), 북미(2), 유럽(1), 일본(1), 인도(1), 러시아(1), 멕시코(1) 총 17개소('22)

○ **(분쟁대응 지원)** 기존 '특허·상표·디자인'에 더해 **영업비밀**까지 분쟁현황·판례 등 정보제공* 및 **분쟁대응전략 지원 확대**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 분쟁정보 제공 대상국가·범위 확대

2 주요 우리기업 진출국과의 FTA 협상 시, 영업비밀 보호 강화 추진

○ **국가별 법제현황**을 **수준별로 분류**, 이에 따라 **맞춤형 통상전략** 마련

< 영업비밀 보호법제 수준에 따른 통상협상 전략(예) >

상대국의 보호법제 수준		맞춤형 통상협상 전략(안)
영업비밀 보호제도 부재	⇨	**영업비밀 보호 근거** 마련(정의, 보호규정)
TRIPS 수준 (영업비밀 보호근거 구비)		**민사구제 명문화**(금지명령, 손해배상), **공무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TRIPS+ 수준 (보호근거·민사구제 구비)		**형사구제 명문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침해 방지 등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2-1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적발이 어렵고, 그 결과 **적절한 처벌** 및 **유출행위 억제***에 한계

* 영업비밀 해외유출 형사사건 처리(명)
: ('15) 46 → ('16) 25 → ('17) 23 → ('18) 93 → ('19) 48 (연도별 검찰연감)

○ **한정된 자원**으로 **사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경제·안보에 핵심적인 분야**를 찾아 **모니터링하는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필요

* 예) 특허분석으로 주요 기술보유 기업을 특정하면 그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과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해외유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외유출 처벌**에 필요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

* 현행법은 국내·해외유출에 대한 입증요건이 동일

추진과제

1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국가 산업·안보상 해외유출 방지가 필요한 영업비밀 등 파악을 위해 **특허·R&D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는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연구개발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연구자 정보 파악 가능

○ **(필수전략기술)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관련산업 분석, 전문가 검증**을 통해 산업·안보상 중요한 **필수전략기술*** **리스트 구축**

* 산업·안보상 중요성(choke point)으로 인해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

○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기업*을 발굴**하여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보안강화 등 지원

* 정부 R&D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파악은 주로 기업의 자율신고에 의존

- **(해외특허 확보) 중소·중견기업**의 **국가핵심기술 특허**는 해외 기술도용 차단을 위해 **해외특허 확보 지원**

○ **(핵심인재) 특허 발명자, R&D 연구자 정보**를 통해 **산업별·기술별 핵심인력 Pool을 구축**하고, **인력 유출 고위험 분야** 등 **파악**

* 특허 발명자 정보 활용 등을 위해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 마련 추진

○ **(예방활동) 도출된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모니터링, 첩보수집** 등을 **강화**함으로써 **적대적 M&A, 인력유출 등에 사전 대비**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분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강화가 필요한 **기술분야·대학** 등 파악

* 교육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대학 학과별로 구분하여 파악 중

- 유학생이 집중된 대학 연구실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및 교육 지원

2 해외 유출의 요건완화 및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유출자료의 회수도 어려워** 국내 유출보다 입증요건 등 완화 필요

○ **(요건완화)** '부정한 이익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삭제하여 **해외유출에 대한 입증요건 완화**

○ **(산업스파이)** '**외국의 정부·기관·국영기업** 등을 위해 **해외 기술유출**하는 자*'를 **산업스파이**로 **정의** 및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 처벌 강화

* 해외유출에 관여한 내국인 포함 / ** 형소법 규정(10년)보다 시효 장기화 등

○ **(출국금지)** 영업비밀 해외유출 수사 시 출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법에 규정

2 – 2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인재유출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연구자에 대한 **보상강화** 등 **처우개선**을 통해 **해외이직 유인 억제 시급**

* 고학력자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두뇌유출'이 63개국 중 30위로(순위가 낮을수록 유출위험 높음) 중위권('19, IMD 세계 인재보고서)

○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인력유출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이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다수

* 직무발명 보상이 인력유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74.9% ('12, 특허청 연구용역)

** 2년간('17~'18) 특허·실용신안·디자인 2건 이상 출원기업 중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한 비율은 대기업 81.2% 중견기업 67.2%, 중소기업 37.1%('20,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해외인재**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우리 첨단산업** 분야(반도체, 배터리 등) 대상 **인력채용 시도 증가**

○ **구인플랫폼, 헤드헌터*** 등을 통해 **고액의 연봉**을 **미끼**로 **유혹**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직업알선 브로커가 5년간 국내 기업 연구원 43명을 중국의 동종업체로 이직 알선('21.5)

추진과제

1 직무발명 보상 내실화로 기술인력의 연구의욕 고취

○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문화**를 **확산**하여 기술인력의 **해외이직 유인**을 **제거**하고 **연구의욕을 고취**

○ **(보상금 내실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검토 및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정부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 확대

* **(우수기업 지원확대)**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가점부여('21~), 서울보증 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21~), 특허 등 연차등록료 감면기간 확대 추진('22~) 등

○ **(소송제도 개선)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없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 도입**(발명진흥법)

2 퇴직 기술인력 채용지원으로 전문기술의 국내활용 장려

○ **(공공부문 채용)** 해외 인력수요 급증 분야(OLED, 반도체 등)의 **퇴직 기술인력을** 기술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특허심사관* 등으로 채용**

* 전문임기제 선발시 최대 10년 근무(60세 정년 無)

○ **(인력활용 사업)** 부처별 고경력 **퇴직전문인력 활용사업 확대**

* 예) 고경력 연구인력 중소기업 취업지원(중기부), 산업현장교수 지원(고용부) 등

3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 제재방안 검토

○ **(브로커 제재) 해외 동종업체**에 **이직**시키면서 **영업비밀 유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죄**에 포함시켜 **공범**으로 **제재** 검토

○ **(해외 구인정보) 구인플랫폼** 등에 게시되는 **해외 기업의 경력자 구직정보**를 **모니터링**하여 **관련 기업**에 **공유**하는 **방안** 검토

4 국가 주요기술 우수연구자 명예·사기 진작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주요기술** 분야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부포상 규모 확대, 재고용 우선지원** 등 **예우**

2 – 3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사이버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데이터 탈취, **랜섬웨어**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 문제** 대두

○ 최근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정보가 **해킹 위험에 직면***하는 등, 사이버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 고조

* '21.5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21.7, 국회 정보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킹 시도 발생('21.6, 국방부 정례브리핑)

○ 그간 온라인을 통한 영업비밀 데이터 유출·훼손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보호대책 마련**은 **다소 부족**

□ **디지털 협정*** 등 **국가간 데이터 이동이 확대**되고 있어, 데이터 형태로 보관되는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

* USMCA('18), CPTPP('18), 미일디지털협정('19),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20) 등

추진과제

1 디지털 환경에서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

○ 사이버해킹, 랜섬웨어 등 **데이터를 대상**으로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제도 정비**

* ①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영업비밀 데이터 변경·삭제도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②영업비밀 침해행위 성립요건 중 '부정한 수단'의 유형으로 기존의 '절취·기망·협박' 외 '전자적 침입'도 추가 등

○ 기업이 보유중인 **영업비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보호 지원**

* ①퇴직직원의 디지털기기에 보관된 영업비밀 데이터 보존 지원, ②유출이 의심되는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등

○ 최근 주요 통상협정(USMCA, 美-中 무역협정)의 영업비밀 보호규범과 **국내 법제간 정합성을 분석하고 개정 필요성 검토***

* (주요 검토사항) ① 민사상 입증책임 전환, ② 기업·단체 가중처벌 등

2 국가 안보차원의 데이터 해외유출 사전예방

○ **(외국인투자)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외국인의 투자** (M&A 등) 시 **심의제도 도입 검토**

* 미·일·EU 등은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이를 심의

○ **(해외진출 기업 지원)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국외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현지 데이터 제도, 보호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3 사이버 기술유출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 다양한 신·변종 방식이 등장하는 사이버 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협의회 운영)** 산업계·학계·정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해킹 예방정보 적극 공유**

○ **(정보공유 확대)** 정부기관(정보기관, 과기부)이 운영중인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의 **민간 연결을 확대**하여 위협정보 사전공유 강화

4 비대면 ·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안 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 재택근무·클라우드 등 **기업의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정보보안 기술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지털 분야 R&D에 특허분석 지원**

○ 비대면·원격환경 위협분석, 5G·AI·클라우드 보안 등 **신기술 활용 역량**을 갖춘 **보안 전문인력 양성**

* ①정보보호 관련 대학·대학원 내 교육과정 신설, ②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융합보안 대학원 확대 등

3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

3-1 신속·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조사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검·경, 정보기관, 중기부 등이 **각자 전문기능**을 수행 중이나, **다양한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의 **신속·효율적** 처리에 **한계***

* 검·경, 정보기관은 정보수집·수사에, 중기부는 조사에 전문성을 갖추었으나, 사건처리에 요구되는 기술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중

○ 기술이 **고도화**되고 침해·유출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적절한 대응에 **기술·정보수집·수사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상황

□ **법률·기술 전문성**을 모두 갖춘 **특허청**이 **기술경찰**을 출범하였으나, 전문수사 **역량·경험 및 인프라**를 **단기**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현실

○ 포렌식 등 **전문인력, 범죄·수사정보** 등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어려워* 대규모·전문 기술탈취 사건의 **효율적 처리**에 **애로**

* 관할 검찰·경찰청에 특허청 수사관이 매번 인력·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 진행

추진과제

1 기술유출 전문수사를 위한 특허청 기술경찰 기능 및 역량 강화

○ **(기능·인력) 기술유출 범죄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인력 확충** 및 **전문인력 보강**(포렌식 요원, 검사파견 등) 추진

* (현행) 영업비밀(무단 취득·사용·누설 행위만 수사), 특허, 디자인 등 →
(확대) 영업비밀침해 수사 범위에 무단유출·부당보유 행위 추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단속지원 업무 범위* 및 포렌식 등 과학수사 지원인력 확대

* (현행) 위조상품 단속 → (확대)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물품 단속 등 추가

○ **(전산시스템)** 경찰과 **수사정보 공유·사건이송** 및 범죄경력 등 **수사에 필요한 정보조회**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 부처간 수요조사·협의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사무 확대 등

○ **(타부처 교류)** 경찰청·관세청·정보기관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노하우·사건정보** 및 개별부처의 **전문지식**을 **공유·확산**

* 국가방첩전략회의 등에 특허청 참여,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정보공유

○ **(국제협력)** 산업스파이 수사 관련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특허청-경찰청-인터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 △국제 및 주요국 수사기관 등과 관련 정보 공유, △수사요원 공동교육 및 집행관련 사례 공유,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등

※ (참고) 문체부-경찰청-인터폴간 '온라인 저작권 침해' 국제공조수사 MOU 체결('21.4)

- 美 지재권조정센터*와 영업비밀 보호·집행 관련 정보 공유 추진

* 국토안보부 내 FBI·FDA·상무부·특허청·관세청 등 범부처 지재권 집행 연합체

2 신속·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조사·수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 **(조사·수사 연계) 중복조사 방지** 및 **불법행위의 효율적 제재**를 위해 특허청, 중기부, 무역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 사건 당사자의 추가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신고자 동의하에 타부처 행정조사·수사*로 사건연계·정보공유 등 부처간 협력 강화

* 예) 무역위 조사사건 기술경찰에 통보 → 기술유출 기획수사에 활용 → 관련 기술유출 추가 적발·검거 → 무역위 직권조사 및 수출입 금지 조치

○ **(해외유출 수사)** 국가주요기술 해외유출 등 **중대사건 발생 시 신속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특별 대응조직 신설 협의**

3 – 2 유출 피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지원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심각**하나 대응에 애로

* 최근 5년('15~'19) 중소기업(316개)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4,346억원('20, 중기부 실태조사)

** 입증 곤란(71.4%), 시간·비용부담(35.7%)에 피해기업 23.5% 무대응('21, 특허청 실태조사)

○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및 **증거조사**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

* 중소기업 필요 정책은 법률자문(54%), 증거조사의 어려움 해결(42%) 순('20, 특허청 실태조사)

** 영업비밀 유출 의심 경험 기업 98%가 증거확보 지원 필요 응답('20, 영업비밀보호센터)

□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처벌**이 **경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 초래

□ 경제적·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영업비밀 분쟁조정 활용 저조**(최근 5년 272건 중 9건, 약 3%)

추진과제

1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소송지원 강화

○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액·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유출기술 가치평가**, **증거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추진

2 중소기업의 분쟁비용 지원 및 법률자문 확대

○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 소송보험** 제도 도입, 기술분쟁 비용 대출을 위한 **지식재산공제** 확대, 영업비밀 침해 **법률자문*** 도입 추진

* (현행)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에서 특허·상표·디자인 관련 법률자문 → (개편) '지식재산 법률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영업비밀 관련 법률자문도 실시

3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영업비밀 분쟁조정 활성화

○ 분쟁 **상담·수사·행정조사 접수** 시 사안에 따라 **조정절차 안내**, 온라인 접수·처리 서비스 개선, **조정위원 Pool 확대** 추진

3 – 3 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선진화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침해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침해** 및 **손해액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고 승소율**도 **저조**

* 영업비밀 민사소송의 1심 기간은 490일로 민사소송 1심의 전체 평균(296일) 대비 약 1.6배('19, 지재위 연차보고서, 사법연감)

○ **유출기술**의 **경제적 가치***·**손해액**에 대한 **공신력 있는 판단**기구 부재

* 수사기관이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움('21, 검찰청 인터뷰)

□ 형사소송 시 **공판** 및 **수사과정**에서 **기술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기소율**이 **저조**하고, **무죄율**은 **높은** 상황*

* (기소율) 일반형사(30%)의 1/3수준(9.7%), (무죄율) 일반형사(3.4%)의 10배(34.5%)

○ 일부 **지재권 민사소송**은 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할집중*** 하였으나, **형사·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은 이러한 체계가 **미비**

* 특허·디자인·상표권 침해 민사소송: 고법 소재 6개 지법(1심) → 특허법원(2심)으로 관할집중('16, 민소법개정)

○ 검사를 보조하는 **전문심리위원**은 민간에서 선정되어 지속적 재판 참여가 어렵고, **피해자 대리인***의 공판참여는 허용되지 않음

* 형소법(§294의2)에 근거, 피해자 진술권은 증인신문 형태로 인정되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기술·법률쟁점의 소명에 한계

○ **압수물 분석 시** 기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

□ **형사소송 과정***에서, 또는 **압수수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보완책** 필요

* 형소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변호인이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가능

** 형소법 제106조에 따라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여 제출받아야하므로 피고가 영업비밀 전자정보를 여전히 보유

□ 경쟁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력 빼가기'** 등 **법인**이 관여하는 **조직적 침해행위**가 만연

* 기술유출자의 91.2%가 퇴사자, 유출자의 62.5%가 他 기업 이직('18, 중기부 실태조사)

○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부당이익 회수**** 필요

* (日) 법인에 대해 가중처벌('93) : 개인 2천만엔 vs 법인 10억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해외 유출만 수익 몰수 가능(국내 유출은 불가)

(해외) 주요국(美·獨·日)은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을 **몰수·추징**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산업기술은 **침해로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규정 有**

□ **일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형사구제만 가능**하고, **제3자가 영업비밀 침해 제품**을 **유통** 및 **수출입 시** 이를 **막을 근거가 부족**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 및 반환을 요청받고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는 행위

추진과제

1 영업비밀 침해 피해의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 완화

○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있어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 **(증거수집)** 자료의 **은닉, 허위 제출** 확인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 증언녹취 및 증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는 자료보전명령 등 신설

○ **(입증책임)** 침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실시행위를 입증**하는 의무* 부과

* 원고가 피고의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실시형태를 제시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구체적 실시형태를 제시

○ **(손해액 산정)** 유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공신력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손해액 산정에 대한 어려움 해소

* ①발명의 평가기관이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②민간이 수행한 감정결과에 대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평가관리센터 설립 등

2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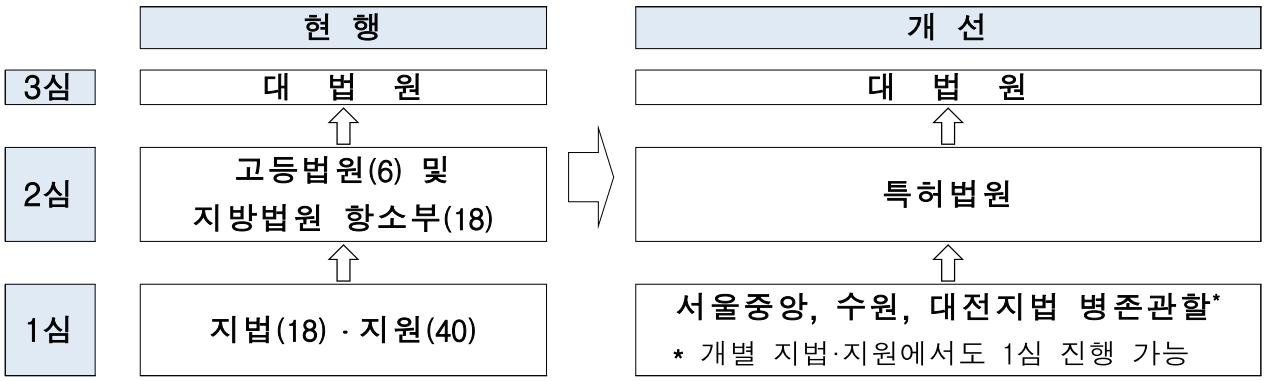
○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있어 **기술적 쟁점**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추진

○ **(관할집중) 지재권 형사소송, 영업비밀 민사소송**도 **관할집중** 추진

- 형사소송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존관할*을 검토하고, 관할집중 법원에 기술자문관을 배치하여 법원의 기술전문성 보조

* 지재권(서울, 대전) 또는 산업기술·영업비밀(수원) 범죄 전담수사부 설치 지역

< 지재권 소송관할 집중 체계도 >



○ **(기술심리관) 기술심리관*** 및 피해자 **대리인**이 기술적·법적 쟁점 정리를 위해 **형사공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특허법원에서 기술심리관제도 운영 중으로, 재판장 허가에 따라 기술적 사항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재판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가능

○ **(압수물분석)** 침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의 확보**를 위해, **압수자료 분석**에 **기술전문가**가 **참여***토록 규정 신설 검토

*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에 관한 지침' 개정 필요

3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 방지

○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비공개재판) 공판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근거 마련

*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결정가능(법원조직법 §57)

○ **(비밀유지) 법관 명령**으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및 **대리인만 열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명령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 피고인 증거 중 영업비밀은 법관만 열람하는 비밀심리절차(민사소송, 旣 도입)

** 미국 Attorney's Eyes Only 제도

○ **(폐기명령)**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확정**한 자료에 대하여, 압수물 및 원본까지 **법인** 및 법인 **대표자**에게 **폐기를 명령**하는 규정 신설

*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

4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 억제

○ 법인이 관여하는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익환수** 추진

○ **(형량강화)** 법인의 조직적인 인력유출·영업비밀 유출행위를 엄벌하도록 개인·법인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벌금형을 3배*** 강화

* 현행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정정비)** 경쟁사 직원채용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명문화***하여, **처벌근거 명확화**

* 예) 영업비밀 형사처벌 조항에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가진 종업원에게 영업비밀을 유출하도록 청탁하거나, 유출을 목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

○ **(부당이익환수)** 침해행위로 **이익을 볼 수 없도록**,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등을 **몰수**하고, 불가 시 그 가치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도 몰수 불가능한 재산은 그 가액을 추징

5 영업비밀 보호대상 및 침해유형 정비

○ **(보호대상 정비)** 국민들이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을 법문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정의에 **구체적인 예시 추가*** 검토

* (현행)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개선) 고객정보, 노하우, 연구성과물, 프로그램 등 추가

참고 : 美 영업비밀 정의

- 패턴·계획·편집물·프로그램 장치·공식·디자인·프로토타입·방법·테크닉·절차·프로그램 또는 코드를 포함한 모든 형태와 **유·무형에 관계없이** 재정적·상업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공학적 정보

○ **(유형정비) 영업비밀의 부당보유, 무단유출** 등 형사처벌만 가능한 행위를 **민사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정의조항**에 **규정**

-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임을 **인지하고도** 양도받아 **유통·수출입*** 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 및 **벌칙** 부과

* (日)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만든 물건을 양도, 수출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15)

[Part Ⅲ]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부정경쟁방지 부문

1. 추진배경

◇ 부정경쟁 방지는 거래 질서 유지에 핵심적 역할 수행

○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거래법 등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법**으로 **경제의 발전**에 따라 시장이 복잡해지며 **중요성 증대**

- '출처 오인·혼동행위', '무임승차 행위'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규제**

○ 그간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성과에 무단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해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도록 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핵심적 역할 수행**

- 아이디어 탈취와 같은 특허·상표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여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부정경쟁행위 방지 필요성 증가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이 출현하고, 디지털 환경의 **초연결적 특성**에 따라 지대한 파급효과 야기

- 다양하게 출현하는 **新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등록 권리 없이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대응이 필수**

○ 이에 **주요국**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영업방해 행위 등 **新유형의 행위까지 제재를 강화***하여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 (日) 부정한 데이터 취득·사용 행위 부정경쟁행위 신설('19.12)
(中)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여 링크 삽입, 부정 프로그램 사용 등 인터넷 이용 영업활동 방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제재('18.1)

☞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부정경쟁행위 방지 필요**

2. 정책환경 분석 및 추진방향

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제도의 발전 과정

□ **(도입 배경)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61년 제정**하였으나, 경제 발전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음*

* 외국인은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 손해배상, 혼동방지표시 적용 제외('61년 부경법)

○ 이후 파리협약('80), 상표법 조약('03) 가입 및 한-EU FTA('11), 한-미 FTA('12) 체결 등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며 국제 표준**에 맞게 **법 개선**

○ 경제성장 등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부정경쟁행위**가 나타나며 **역할 확대**

□ **(그간 개선방향)** 도입 이래 크게 ① 새롭게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추가**, ②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강화** 측면에서 개선

① 新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추가

참고 : 부정경쟁행위 개정 연혁

- 2001년
 -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 행위
- 2004년
 - 도메인 이름 부정사용 행위
 - 상품형태 모방 행위
- 2013년
 -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2018년
 -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행위
- 2021년
 -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 사용 행위

○ **상표법 조약 가입**을 위한 **준비**로서,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 손상행위, 대리인 등의 상표 무단사용행위 추가**('01)

○ **판매 목적**으로 **기업의 상호** 등을 선점하는 **'사이버 스쿼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도메인 이름 부정사용**에 대한 **규정 신설**('04)

- **상품 라이프사이클 단축, 복사·복제 기술 발달**로 **모방상품에 의한 피해가 증가**해 **상품형태모방 행위**를 **추가**('04)

○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마련('13)

*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 침해하는 행위

○ **거래 및 교섭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자료** 등의 경쟁업체 유출, 유사 제품 출시하는 등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추가**('18)

○ **한류 확산**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21)

- **데이터 시장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데이터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규정 마련**('21)

②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강화

○ **(손해배상 강화)** 손해액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고의적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배상) **도입**('20)

* (기존) 생산능력 한도內 배상→(개정) **생산능력 초과분**은 **합리적 실시료**로 추가 배상

○ **(행정조사 신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98)

-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시정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제고('20)

○ **(집행력 강화)** 위조상품 단속 위주의 **특사경 조직·인력을 확대**해 **상품주체 혼동야기 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19)

<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특사경 수사 현황 ('21.10, 특허청) >

(단위 : 건)

구 분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기타 부정경쟁행위	계
행정조사*	49	56	100	62	50	317
특사경 입건자수**	9	해당없음	84	해당없음	해당없음	93

* 행정조사 시행('17.7) 이후 누적 처리건수, ** 특사경 신설('19.3) 이후 누적건수

나 주요국 정책동향

새로운 거래환경에 부합하도록 「반부정당경쟁법」 전부개정('18.1.)

○ **(소비자 보호)** 경쟁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거짓·오인 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포함

* 경쟁자의 이익을 직접 저해하지 않더라도,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

** 전자상거래상 빈발하는 판매량·이용자평가·수상내역 조작 행위 등

○ **(제재 신설)** ① 인터넷을 이용한 경쟁자의 **영업활동 방해행위***, ② 거래기회·경쟁우위를 얻기 위한 **뇌물수수 행위**

* 링크 삽입, 부정프로그램 사용, 악의적인 서비스 호환방해 등

○ **(보호집행) 행정당국의 조사권한*** 및 **민·형사 책임****강화

*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증거조사, 재산 차압·압류, 은행계좌 조회 등 권한 부여

**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300만 위안 한도 내에서 법정 손해배상액 인정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법제 정비('15.12)

○ **(소비자 보호)** 기업이 주의의무*를 불이행하여, **소비자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제재

* 기업이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준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주의의무 규정

**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소비자가 다른 거래적 판단을 했을 경우

○ **(다양한 청구권 보장)** 소비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경업자뿐만 아니라 **경제·소비자 단체 등에도 금지청구권 등 보장**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보호체계 구축('19.7)

○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제공할 수 있도록, **부정한 데이터 취득·사용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제재**

다 부정경쟁방지 실태

□ **(부정경쟁방지 수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수준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는 6.22로(10점 척도, '21, 특허청 실태조사) 낮은 수준

□ **(경제적 피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직·간접의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40조원**에 **육박**할('20년 우리나라 GDP의 약 2.1%) 것으로 **추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경제적 손실 약 40조원 (지식재산연구원 분석)

- **(직접피해)** 연간 **8.7조원** ('21년 1,250개社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
- **(간접피해)** 연간 **31.5조원**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직접피해가 2차적으로 유발하는 생산손실, 부가가치손실, 고용손실을 산출)

간접피해	생산손실	부가가치손실	고용손실	합계
금액(조원)	18.4	8.8	4.3	31.5

□ **(피해실태)** '21년 실태조사 대상 기업의 **4%가 국내**에서 **평균 9.58억원**, **1.2%가 해외**에서 **평균 9.6억원**의 부정경쟁행위 피해를 경험

○ **(피해유형)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경험이 가장 많았고, 시간·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하지 않는 비율**이 **42%**에 달함

- **특허청의 수사·행정조사 인지도는 각각 36.1%, 29.9%로 저조**

○ **(소비자)** 소비자 대상(1000명) **실태조사에서 46%**의 응답자가 **피해경험**이 있고, **원산지·성능·수량** 등의 **거짓표시**의 **피해**가 **37.3%**

□ **(민사소송)** 최근 3년('17~'19)간 1심 판결(연평균 81건) 중 부정경쟁행위 **인정은 15%, 손해배상액은 27백만원(중앙값)** ('20, 특허청 판결문 분석)

○ **피해의 주된 유형**은 **타인성과 무단사용**이 **40.2%**, **상품·영업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가 **33%**,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가 **15.1%**

* 1심 인용률은 타인성과 무단사용(6.9%), 상품영업 혼동행위(18.7%), 형태모방(21.1%)

□ **(형사소송)** 최근 5년('15~'19) 검찰 처리사건(2,931명)의 **기소율은 약 14%** (연도별 검찰연감), **형사 1심** 판결의 **무죄율**은 **8%** ('20, 특허청 판결문 분석)

라 향후 정책방향(보완할 점)

□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환경 속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부족

○ **디지털경제 도래**로 대부분 경제활동이 온라인화되면서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는 **시장참여자의 범위 및 대상 확대**

- 그러나 현행법은 **환경변화에 따른 잦은 개정**으로 **법 조문간 중복 발생,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 디지털 경제환경에서 다양화·지능화되는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한계

○ **신기술**(AI, IoT 등)의 등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 **전통적 지식재산권**으로 **충분한 보호**가 **어려운 영역**의 **출현**

- 가상공간에서의 영업활동 방해 등 **디지털 공간**에서 **新부정경쟁행위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보호 형태가 불명확**

☞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부정경쟁 법체계를 정비**하고, **新유형 관련 규정 검토**

□ 제도의 개선이 실효적 제재까지 이어지기에 한계

○ 그간,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 다양한 행정구제 수단**을 마련하고, **민·형사상 구제를 강화**

- 다만, **집행인력의 부족** 및 **근거 규정 미비**로 **행정구제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는 시간·비용 부담 등으로 **민사소송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

□ 해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지속

○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증가,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에 이어, 최근에는 **농산품 원산지 오인·혼동** 등 **피해** 고조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신청이 증가**하는 등 **교류·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국의 보호수준이 미흡**하여 **우리 기업의 성과 보호 한계**

☞ **제도의 개선**이 **부정경쟁행위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

3. 부정경쟁방지 비전 및 전략

【 비 전 】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 목 표 】

◆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수준 향상**

* 보호 수준에 대한 국민 인식도(10점 척도) : 6.3점('21) → 7.0점('26)

◆ **부정경쟁행위 방지로 경제적 피해 예방**

* 부정경쟁행위의 경제적 피해액 : GDP의 2.1%('21) → GDP의 1%('26)

전 략	핵심 정책과제
1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계 정비	1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쟁법 체계 개선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정립
2 집행 실효성 확보 및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1 건전한 경쟁질서 조성을 위한 집행의 실효성 확보 2 부정경쟁방지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및 국제협력 강화

4. 전략별 추진과제

1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계 정비

1-1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쟁법 체계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소비자기본법 등과 함께 **건전한 거래·시장질서**를 규율하는 기능을 수행

○ 상품 및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형태모방, 아이디어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를 법령에 명시하고, 민·형사, 행정조사 등을 통해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이래 총 2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조문의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 **거래수단·방법**이 **복잡·다양화**되면서 일부 부정경쟁행위가 **유사·중복***되는 등 법령 운영이 **비효율적**인 상황

* 상품출처 오인혼동과 영업주체 오인혼동, 원산지 허위표시와 생산지 허위표시 등

□ 또한, **규율대상**을 **나열**하는 방식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이 필요하여,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

* 최근 데이터 보호,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추가한 부정경쟁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21.11) 부정경쟁행위가 11개목에서 13개목으로 증가

○ 새로운 행위를 **포괄**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은 정의규정에 없는 '**성과물**' **도용행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고착화

□ 한편, 부경법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대상만을 **보호**하고, **중간수요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의 **보호에는 한계**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 비율이 46%에 달함('21, 특허청 실태조사)

추진과제

1 부정경쟁방지법 법 체계 정비

○ 부정경쟁방지법 상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 부정경쟁행위를 **보호대상** 또는 **행위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유사·중복**되는 부정경쟁행위를 **통·폐합**하는 등 **규율대상 정비**

[예시] 보호대상별 부정경쟁행위 분류

- **['수요자 보호' 목적]** 상품이나 광고 등에 거짓의 원산지 표지행위·타인의 상품 사칭행위·품질 혹은 내용 등 오인 표지 등
- **['경쟁자 보호' 목적]** 상품 및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등 유발행위, 형태모방행위 등

○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검토**

[참고] 해외 주요국의 일반적 정의규정 사례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부정한 거래행위는 금지된다.'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2조]** '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 중에 자발성·평등성·공평성·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경법의 국제적 규범준수 및 보호대상 명확화를 위한 목적 조항 개정

○ 목적 조항에 **국제조약**(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의 충실한 이행** 규정*

* ①양자FTA·RCEP·CPTPP 등 최근 국제무역협정에 부정경쟁행위 포함, ②한류의 전세계 확산에 따른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미등록표지, 퍼블리시티권 등 보호를 위한 주장 근거 마련

○ 경쟁자 외에 **수요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도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이 경쟁자 보호에 치중하여 있고, 라·마·바목과 같은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 공중의 오인·혼동 유발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중립적인 소비자단체 등도 '금지청구'에 한하여 청구적격 인정 검토

1 –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정립

현황 및 문제점

□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직업·금융·교육 등 인간의 모든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가상세계 중심으로** 비중이 급속히 이동

○ 특히,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이 마케팅·쇼핑 및 공연·전시 등 **다양한 산업 영역과 결합***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진행**

* 명품브랜드 구찌는 '제페토'에 '구찌 빌라'를 개설하여 의상·가방 등 판매, 메타버스 내에서 선거유세·입학식·채용설명회·공연·팬사인회 등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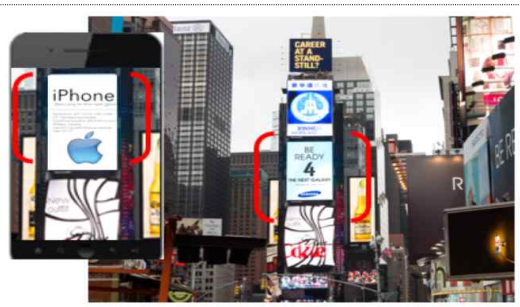
** '25년 메타버스 시장규모는 2,800억달러(한화 약 33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20,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 **기존 행위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新유형의 부정경쟁행위** 출현

○ 현실뿐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기술적 수단 악용, 경쟁 기업 폄훼***, **수요자 선택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 발생

*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상표·영업표시 등을 바라볼 때마다 경쟁사 광고 노출 또는 비방문구 표출 등의 행위

** 광고표시를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사진 클릭시 특정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

< 코카콜라 광고 응시 → 비판 광고 >	< 아이폰 광고 응시 → 갤럭시 광고 >
	

추진과제

1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연구

○ **가상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 연구

○ 상품·영업주체의 오인·혼동, 희석화, 형태모방 등 **기존 부정경쟁행위 요건**의 **적용 여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는 가상현실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준거법·재판관할** 등 연구

2 영업방해 · 부당경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검토

○ on/off-line 상에서 **경쟁자의 신용저해, 홈페이지 무단 링크 삽입***, **경쟁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포** 등 영업방해 행위

* (사례) 홈페이지 방문 고객에게 무단 링크 삽입자가 제공하는 정보 노출 등

○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부당한 경고장**을 남발하여 **거래관계에 위협**을 주는 행위

3 신규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빅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후속조치

○ 과거 유사사례, 관련 민사소송건수,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요예측** 및 **직제·예산 반영**

○ 국내·외 관련 판례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을 포함하는 **'행정조사 지침' 마련** 및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마련**

○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형사처벌도 특허청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 추진(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추진)

2 집행 실효성 확보 및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2-1 건전한 경쟁질서 조성을 위한 집행의 실효성 확보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10)',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19~)'**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17~) 수행 중

○ 그러나, 수사·조사 **집행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효적 제재**에 **한계**

* 위조상품 침해신고 16,935건 → 수사착수 559건(신고건수의 3.3%)에 불과('20)
행정조사 대상 행위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특허청 조사인력은 5명에 불과('20)

○ 또한, '**지재권 허위표시**'의 경우,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적절한 **행정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형벌조항은 존재하나, 최근 5년간 실제 형사처벌 사례는 없음

□ 단시간에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상표로 출원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상호 등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 송가인, 펭수, 덮죽 등 상표분쟁

□ **수요자·중소기업**은 **시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금지청구)에 의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무대응'하는 기업 비율이 55%에(시간·비용 부담, 입증 곤란성에 기인) 달함('21, 특허청 실태조사)

추진과제

1 집행력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시정명령** 제도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검토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 법원 재량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부정경쟁행위 중 공중의 오인·혼동 야기 행위* 및 국제조약 준수** 관련 내용은 **공익적 차원**에서 **행정벌(과태료)**에 의한 질서유지 필요

* 라목(원산지), 마목(생산지), 바목(품질·수량) 오인·혼동 행위

** 제3조(국기·국장 사용금지), 제3조의2(지리적 표시 사용금지)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유통·판매에 관한 방지의무** 부여 검토

○ 지재권 **허위표시(거짓표시)**의 **행정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2 부정경쟁행위 사전예방 및 집행기반 확충

○ 부정경쟁행위 관련 **수사·조사인력을 확충**하고, 각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수사·행정조사 **업무 매뉴얼** 등 개정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부정경쟁행위 **단속사무 지원** 및 **시정권고 권한** 부여 근거 마련(발명진흥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관련 협·단체****와의 **협력** 강화

* 부정경쟁행위 빈발지역 대상 합동단속 실시, 단속공무원 교육·훈련 등

** 한국소비자원, 산업분야별 협·단체와 연계하여 기업·소비자 피해현황 등 실태조사·홍보·교육 실시

○ 부정경쟁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개정)

3 개인 ·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선사용 표지 등 보호

○ 소상공인 등이 등록하지 않고 **먼저 사용하고** 있는 **표지, 디자인 등 보호***

* 미등록 표지의 선의의 선사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 마련

○ 미등록 표지 등의 상표·디자인 권리 **출원 독려**, **법률분쟁 지원**(공익변리사 활용), **교육·홍보 강화** 등

② – 2 부정경쟁방지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및 국제협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중국·ASEAN 등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위반** 및 위조·모방 상품 유통피해도 **증가** 추세*

* 中 A社 단속(건) : ('19) 21,242, ('20) 21,145 / 아세안 L社 : ('19) 845, ('20) 101,160 (특허청)

○ **한류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 **브랜드 도용** 등에 따른 **피해 급증***

* 中의 상표도용 피해기업 : ('16) 311개社 → ('18) 840개社 → ('20) 2,753개社
(주요 도용분야 : 의류·화장품·식품 등 한류 관련 소비재 품목)

○ 신흥시장 중심으로 국내 유명상표를 도용한 **악의적 상표출원** 및 **한국 이미지에 편승하는 부정경쟁행위***도 확산

* 韓 '불닭볶음면' 泰서 잘 나가자, 라면 원조인 日기업도 모방제품에 한글 표기('17)

□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교류·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수준이 미흡***하여 우리기업 보호에 애로

* 국제지식재산지수('20, 美상공회의소, 50점 만점) : 말레이시아(25.6점) > 브루나이(20.6점) > 필리핀(20점) > 베트남(18.3점) > 태국(17점) > 인도네시아(15.1점)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에 우리기업 현지 지재권 신청 증가 추세

○ ASEAN : ('17) 1,885건 → ('19) 2,632건 (약 39.6% 증가)
○ 중남미 : ('17) 633건 → ('19) 902건 (약 42.5% 증가)

○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지재권 보호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국가간 지식재산 보호제도 조화** 추진 필요

추진과제

1 국가간 부정경쟁방지 제도 조화 추진

○ FTA, CPTPP 등 **무역협정** 체결 시, **통상전략**에 **부정경쟁행위 방지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ASEAN·중남미 등 우리기업이 진출한 **주요 신흥국**의 **부정경쟁행위 방지 제도 도입** 및 **선진화** 지원

2 부정경쟁행위 단속 · 수사 등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주요 한류 진출국에서 부정경쟁행위 **단속** 및 **수사**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당국가 **단속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외 단속공무원(검·경, 판사, 세관공무원 등) 대상 정품·위조품 식별 설명회 개최, 초청연수 등

*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특허관 파견 확대 추진(('22) 미·중·EU 등 5개국 → ('26) ASEAN, 인도, 중남미 등 확대 목표)

○ **FTA 협정** 체결국과 집행(enforcement) 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그밖의 주요 한류 진출국**과 **IP보호 대화 채널** 구축

3 해외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지원

○ 해외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분쟁정보 제공***, **전략·비용 지원****, **온라인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지원

* 국가별 부정경쟁행위 방지 제도, 분쟁현황, 판례 등 제공

** 분쟁위험조사, 경고장·소송대응·라이센스 등 상황별 대응전략 제공 및 지식재산 공제 등을 통한 소송 등 비용지원

*** (기존) 중국·베트남·태국 → (계획) ASEAN 전체 국가로 확대

○ **IP-DESK 확대*·개편** 및 **현지 지재권 전문가 확충**을 통해 대응의 신속성과 효과성 제고

* (현재) 중국·ASEAN·북미·유럽 등 17개소 → (계획) ASEAN·중동·중남미 지역 추가

[Part Ⅳ]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추진일정

1. 추진일정

□ 「영업비밀 보호」 부문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		
1 중소기업 · 대학 · 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 해소		
1-1-① 전략적 기술보호를 위한 특허 + 영업비밀 활용의 확산	특허청	'22~
1-1-② 부처 협업을 통한 효율적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22~
1-1-③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특허청	'22~
1-1-④ 기업·대학·공공연별 특성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지침 마련	특허청	'22~
1-1-⑤ 영업비밀 유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확충	특허청	'22~
2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및 생태계 조성		
1-2-①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22~
1-2-②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 양성	특허청	'22~
1-2-③ 영업비밀 보호 상생문화 조성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	특허청	'22~
1-2-④ 영업비밀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파악 체계 정비	중기부, 특허청	'22~
1-2-⑤ 영업비밀 보호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특허청	'22~
3 해외에서의 우리기업 영업비밀 보호 기반마련		
1-3-① 해외 진출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지원 기반 강화	특허청	'22~
1-3-② 주요 우리기업 진출국과의 FTA 협상 시, 영업비밀 보호 강화 추진	산업부, 특허청	'22~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2]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1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관리		
2-1-① 영업비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산업부, 특허청	'22~
2-1-② 해외 유출의 요건완화 및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	특허청	'22~
2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 강화		
2-2-① 직무발명 보상 내실화로 기술인력의 연구의욕 고취	특허청	'22~
2-2-② 퇴직 기술인력 채용지원으로 전문기술의 국내활용 장려	관계부처	'22~
2-2-③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 제재방안 검토	특허청	'22~
2-2-④ 국가 주요기술 우수연구자 명예·사기 진작	관계부처	'22~
3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방안 마련		
2-3-① 디지털 환경에서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 강화	중기부, 특허청	'22~
2-3-② 국가 안보차원의 데이터 해외유출 예방	산업부, 특허청	'22~
2-3-③ 사이버 기술유출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과기부, 특허청	'22~
2-3-④ 비대면·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보안 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과기부, 특허청	'22~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3]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 제고		
1 신속 ·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조사 체계 구축		
3-1-① 기술유출 전문수사를 위한 특허청 기술경찰 기능 및 역량 강화	특허청	'22~
3-1-② 신속·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조사·수사를 위한 공조 체계 구축	중기부, 산업부 특허청	'22~
2 유출 피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지원 강화		
3-2-①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소송지원 강화	중기부, 특허청	'22~
3-2-② 중소기업의 분쟁비용 지원 및 법률자문 확대	중기부, 특허청	'22~
3-2-③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영업비밀 분쟁조정 활성화	중기부, 특허청	'22~
3 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선진화		
3-3-① 영업비밀 침해 피해의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 완화	특허청	'22~
3-3-②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전문성 강화	특허청	'22~
3-3-③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 방지	특허청	'22~
3-3-④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 억제	특허청	'22~
3-3-⑤ 영업비밀 보호대상 및 침해유형 정비	특허청	'22~

□ 「부정경쟁방지」 부문 추진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전략 1]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법체계 정비		
1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경쟁법 체계 개선		
1-1-① 부정경쟁방지법 법 체계 정비	특허청	'22~
1-1-② 부경법의 국제적 규범준수 및 보호대상 명확화를 위한 목적 조항 개정	특허청	'22~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정립		
1-2-①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 연구	특허청	'22~
1-2-② 영업방해·부당경고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검토	특허청	'22~
1-2-③ 신규 부정경쟁행위로 추가된 빅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후속조치	특허청	'22~
[전략 2] 집행 실효성 확보 및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1 건전한 경쟁질서 조성을 위한 집행의 실효성 확보		
2-1-① 집행력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특허청	'22~
2-1-② 부정경쟁행위 사전예방 및 집행기반 확충	특허청	'22~
2-1-③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선사용 표지 등 보호	특허청	'22~
2 부정경쟁방지 통상규범의 글로벌 조화 및 국제협력 강화		
2-2-① 국가간 부정경쟁방지 제도 조화 추진	특허청	'22~
2-2-② 부정경쟁행위 단속·수사 등 집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특허청	'22~
2-2-③ 해외에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부정경쟁행위 대응 지원	특허청	'22~

참 고 **기술·영업비밀 유출 관련 통계**

1. 기술유출 형사사건 현황 (대검찰청 검찰연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접수 (명)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누설 통계만 산출)	국내	1,088	1,207	1,204	1,072	1,153
		국외	47	37	49	116	83
		소계	1,135	1,244	1,253	1,188	1,236
	산업기술보호법		35	41	68	136	115
	합계		1,170	1,285	1,321	1,324	1,351

2.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특허정보원('13), 지식재산연구원('16, '20))

□ **영업비밀 피침해 현황** (단위 : 개/억원, '20년 국내·해외 통합조사)

구 분	국 내			해 외		
	대 상 기업수	유 출 기업수	평균 피해규모	대 상 기업수	유 출 기업수	평균 피해규모
2013년	800	75(9.4%)	-	206	30(14.6%)	-
2016년	616	86(14%)	21.1억원	616	24(3.8%)	24.4억원
2020년	**991**	**93(9.3%)**	**12.8억원**	-	-	-

□ **영업비밀 유출주체** (복수응답, 단위 : %, '20년 국내·해외 통합조사)

구분	국 내					해 외				
	내부인			외부인		내부인			외부인	
	퇴직자	평사원	임원	협력 업체	경쟁 업체	퇴직자	평사원	임원	협력 업체	경쟁 업체
2013년	78.7	33.3	-	36.0		23.3	20	3.3	76.7	
2016년	72.9	32.9	11.4	54.5	45.5	44.4	44.4	22.2	63.2	26.3
2020년	**57.6**	**12.1**	**3.0**	**6.1**	**18.2**	-	-	-	-	-

3. 산업기술 유출 현황 (단위: 건, 산업부·국정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21.6.	계
산업기술	30	25	24	20	14	17	11	141
국가핵심기술	3	8	3	5	5	9	5	38

참고 기업 대상,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21)

Ⅰ. 실태조사 개요

□ **(목적)** 국내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현황** 파악

□ **(조사방법)** 전국 **제조·비제조업 사업체 1,068개社***를 대상으로 e-mail, fax 등을 통한 조사

* 제조업 851개社, 비제조업 217개社로 업종·종사자 수 등을 고려한 표본구성

Ⅱ. 조사결과

1 빈번한 영업비밀 침해·유출 및 막대한 영업비밀 유출피해

○ 응답기업 중 **11.1%**가 **영업비밀 침해·유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피해의 96.1%가 국내기관·기업에서 비롯됨

○ **최근 5년간 제조기업**의 **피해경험**은 **약 2.7만건**으로 **추정***되며, **기업 당 평균 피해규모**는 **약 8.9억**

* 표본(1,068개社)의 피해경험·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사자 10人이상 제조기업 등으로(약 20만개社) 확대

2 피해입증 어려움에 따른 대응 부족 및 정책 인지도 저조

○ 피해발생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은 **23.5%**에 달하며, 그 이유로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이 **7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한편, **영업비밀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과반을 차지

3 내부자 중심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관리 미비

○ **영업비밀 유출주체**로 **내부인**의 비중이 **78.1%** (퇴직자 61.3%, 재직자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영업비밀 보호 **전담인력**은 **평균 0.4명**에 불과하며, **경업 또는 전직금지약정서**를 체결한 경우도 **36.5%**로 저조

참고 **대학·공공연 대상,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결과('21)**

Ⅰ. 실태조사 개요

□ **(목적)** 대학·공공연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현황** 파악

□ **(조사방법)** 기술이전·사업화를 실시하는 대학·공공연 298개 중 대학·공공연 105개(대학 54/공공연 51)로부터 응답회수('21.7.12 ~ 30)

Ⅱ. 조사결과

1 영업비밀의 저조한 인지도 및 영업비밀로서 연구성과·부산물 관리부족

○ **영업비밀 정의·요건을 인지**한 기관은 **31.4%** 수준이며, 일반과제 등의 **연구부산물**은 **개별 연구자가 임의관리**하는 경우가 **49.5%**로 가장 많음

○ 특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시스템 등 인프라 부족**이 **7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공공연 대비 대학의 비밀관리활동이 미흡

○ **(출입통제)** 대학의 **55.6%**만 **외부인 출입통제**를 실시하며(공공연 90.2%),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37%**에 달함(공공연 9.8%)

○ **(자료관리)** 대학의 **50%**만 **문서등급을 지정**하며(공공연 72.5%), **전자문서 반출통제**는 **37%**만이 수행(공공연 70.6%)

3 외국인 연구원, 퇴직자·이직자 등 인적관리 미비

○ 외국인 연구참여가 이루어지는 기관 중 **외국인 관리규정을 보유**한 경우는 **35.1%**에 불과하며,

○ **퇴직자·이직자 대상 연구정보 보호조치**에 있어 **대학**은 **특별한 보호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57.4%**로 가장 많음(공공연 29.4%)

4 연구보안 예산 부족

○ 연구보안 예산규모에 있어 **5천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대학 87%**(예산없음 29.6%), **공공연 51%**(예산없음 25.5%)임

참 고 **소비자 대상,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21)**

Ⅰ. 실태조사 개요

□ **(목적)** 소비자들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현황**을 파악

□ **(조사방법)** 전국 17개 시도별 **만 20세 이상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웹페이지 기반 **온라인 조사**('21.7.12 ~ 20)

* 20·30·40·50대 이상 각 250명으로 구성 (남성 508명, 여성 492명)

Ⅱ. 조사결과

1 구매자의 위조상품 인지 부족 및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활발

○ 위조상품 구매 이유로 **위조상품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61.8%**로 높고, 정품구매 비용부족(24.8%), 정품과 품질상 차이적음(13.4%) 순임

○ 또한, **온라인 쇼핑몰**(43.6%), **소셜커머스**(18.5%)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2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

○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빈발**

○ 피해경험에 있어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음

3 부정경쟁행위의 높은 인지도 대비 대응절차에 대한 인식 미비

○ 주요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및 SNS를 통해 **1개 이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가 **81.2%**로 대부분

○ 그러나, 행위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경험자**는 **18.6%**에 불과하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절차·방법을 모르거나**(35.5%) **실효성이 부족하다**(29.4%)고 응답한 비율이 **64.9%** 차지

참고 **기업 대상,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21)**

Ⅰ. 실태조사 개요

□ **(목적)** 국내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현황** 파악

□ **(조사방법)** 전국 17개 시도별 **제조·비제조업 사업체 1,250개社***를 대상으로 웹페이지, e-mail, fax 등을 통한 조사

* 제조·비제조업 각 625개社로 구성, 업종·종사자 수 등을 고려한 표본구성

Ⅱ. 조사결과

1 형태모방에 집중된 국내외 피해유형 및 막대한 부정경쟁행위 피해

○ 국내외에서 기업이 경험한 행위유형(복수응답)으로 **형태모방 상품의 제작·판매**가 **86.2%**로 가장 많음

○ **최근 5년간** 국내외 기업의 **피해경험**은 **약 39만건, 총 피해규모**는 **약 44조원***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큼

* 표본(1,250개社)의 피해경험·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를 전국사업체(417만개社)로 확대적용

2 시간·비용 부담에 따른 피해대응 여건부족 및 정책 인지·활용 미비

○ 피해발생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비율**은 **47.7%**에 달하며, 그 이유로 **시간·비용 부담**이 **6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정책 인지도는 특허청 **특사경 수사**(36.1%), **행정조사 제도**(29.9%), **해외지식재산센터**(17.4%) 등 정책의 인지·활용은 낮음

3 새로운 행위유형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 존재

○ 추가적으로 **금지가 필요한 부정경쟁행위**로는 **방송 등을 통해 유명해진 상표 등의 부정한 선점**이 가장 많고(80.7%),

- **가상·증강현실에서의 상표 등 지재권 훼손**(62.9%), **지재권 침해 경고장 등을 남발하여 영업활동 방해**(47.5%) 순임

참 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결과**

1. 대학 연구자, 산학협력단 인터뷰 결과

□ 개요

○ 목적 : 기술·영업비밀보호 관련 대학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

○ 인터뷰 대상 : 5개 대학 교수 및 산학협력단

□ 인터뷰 결과

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

○ **(교수) 대학**의 **목적**이 **'인력양성'**과 논문*을 통한 **'지식의 공유·전파'**라는 이유로 대다수가 **연구결과**의 **비밀관리**에 **무관심****

* 연구자의 연구 성과 및 커리어는 논문(게재 학술지, 인용 횟수 등)으로 평가

** 기술보호·이전을 위한 특허출원에는 관심이 많으나, '영업비밀'은 용어 자체도 생소

○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중 **노하우**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비밀관리** 등이 **필요**하나 **교수들에게** 이를 **강제**하기 **어려움**

* 교수 각각이 개별사업자와 같은 구조로 공공연 같은 통제가 어려움(H대 산학협력센터장)

② 연구보안 관리 체계

○ **(보안설비) 대학 본부**가 **건물 출입통제, 전산망 관리** 등을 **지원**하나, **그 외** 보안관리 SW 설치, 비밀관리 등은 **모두 교수의 개별책임**

* 예산·연구비 지원의 한계로 대학교 내 보안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입장

- **상용기술**을 **보유**한 **일부 교수***들은 **자체적**으로 **보안**에 **투자**하지만, **법적 보호**를 위한 **필요조치**(문서 비밀등급 부여 등)에 대해서는 **무지**

* 2차전지 상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OO 교수는 자체 예산으로 보안설비 구축

○ **(보안과제)** 국가 R&D 중 '보안과제*'는 **보안대책에 따라 관리되나 논문 발표 제약 등**으로 **보안과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안보 관련 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연구노트*) R&D** 시 작성되는 연구노트는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 비밀로 관리 여부**는 **자율**이며, **내용의 충실도**는 **교수 성향**에 좌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

③ 연구인력 관리

○ **(교수이직)** 연구노트 등 **연구자료 반출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안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분위기**

* 대학원생이 졸업 후 연구실의 연구과제를 취업한 기업에서 수행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사제지간이어서 문제제기 하지 않음

○ **(외국인 관리) 불법**으로 **취업**하는지 **여부 정도만 관리**하고 있으며, **인권 문제 등**으로 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움**

- OOO **교수**는 자체적으로 **외국 유학생**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제한**

④ 기타

○ **기업과 대학**의 **공동연구 시 기업은 대학의 보안관리**에 대한 **의구심**으로 **자료 공유**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

○ **대학**은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연구성과물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현재의 **근로소득 과세**가 **연구자 사기 저하**

□ 시사점

○ **기술보안**에 대한 대학 본부와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교수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 대학의 목적, 연구환경 등 고려 시 **일률적인 보안강화 보다 기업과의 협력활동, 중요기술 보유여부**에 따른 **선별적 지원 필요**

2. 공공연 인터뷰 결과

□ 인터뷰 개요

○ **(목적)** 공공연의 영업비밀 관리현황 등 확인 및 정책제언 수렴

○ **(인터뷰 대상)** ① OO硏 : 기술사업화센터
② OO硏 : 연구실장 외 3인

□ 주요 내용

① 영업비밀 보호 인식 / 연구정보 관리 실태

○ 국방 관련 **'보안 과제'**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가 **외부와 망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되고, **문서 보안도 철저히** 이뤄지나,

- 대다수 **일반 과제**는 연구자들이 **'보안'을 크게 신경쓰지는 않음**

○ **연구정보 외부 반출시**(강연·출장 등) **'보안 검토'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전문지식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진행

* 과기부 R&D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보안심의위원회 등

○ 기본적으로 모든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기는 하나, **특허로 공개할 부분과 영업비밀로 감춰야할 부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음**

- 다만, 일부 연구자는 향후 '노하우 기술이전*' 등을 대비하여, **공개하지 않을 부분을 별도로 '테크니컬 노트'로 관리** (대외비 유지)

○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방지하지 위해서, **기술이전 계약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기술 내용 협의

- 최근에는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자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 기관 차원에서 논문 발표 전에 특허 출원을 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자들도 최근들어 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을 선호

② 전산·물리적 보안 현황

○ 대다수 공공연은 **전산망·출입 등 보안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며**, 웹하드와 같은 **외부 클라우드와도 차단**되어 있음

* 모든 출연연은 과기부 및 정보기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망'을 사용하며, 해킹·스팸 등 비정상적 활동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고 있음

○ **기관내 전산시스템**에서도 다른 연구팀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 **非관련자가 연구 내용을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 완비

③ 연구인력 관리 실태

○ 연구자의 타기관으로의 **전직·이직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 이직 이후에 연구원에서의 **연구 내용을 공개·활용**(창업·사업화 등) **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외국인 연구원 비율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전체 연구인력 중 5~10% 내외에 해당하며, 대부분 동남아 또는 중앙아시아 출신임

- 외국인 연구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출입관리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며, 퇴직·이직시 보안관리 부서에서 PC·메일 등 확인하고 있음

□ 시사점

○ 물리적 보안체계는 대부분 완비하고 있으나, **연구내용 중 비밀로 감추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

○ 향후, IP-R&D 지원을 확대하면서, 'IP 믹스(특허+영업비밀)' 전략의 중요성 등을 연구자들에게 꾸준히 인식시킬 필요

3. 대기업 인터뷰 결과

□ 면담 개요

○ **(일시)** ‘21. 8. 5(목)

○ **(인터뷰 대상)** OO사 특허팀

□ 주요 내용

① 기술개발 성과의 보호방법

○ 영업비밀은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특허보다 입증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바, **특허로 보호 가능한 영역은 가급적 특허로 보호**

- 제조방법은 특허를 보유하더라도 **침해입증이 어려운 영역은 영업비밀로 보호**
- 수년 내 업계에서 따라올 정도에 불과하다면 후속 특허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법특허도 출원함

②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 현황

○ 출입통제, 전산보안시스템, 방화벽 등 **물리적 관리 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 모든 자료·문서 등은 사내 클라우드에만 저장하게 되어 있으며, 본사·R&D 등 주요 시설에는 더욱 강력한 관리체계 보유
- **다른 부서의 문서·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이 불가**하나, 필요시 공유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열람 허용

○ 본사 차원에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인력을 두고 있음**

* 보안정책팀, 정보지원팀 등 전담조직 및 ‘전사 정보보안 협의회’ 有

○ 생산되는 **모든 문서(연구노트 등 포함)에 대하여 등급 분류**를 하여 대외비 관리 중

* 사내 규정집을 통해 '과제제안서', '연구계획서' 등 문서의 성격별로 비밀 등급 부여

○ R&D 성과물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특허/영업비밀 여부 결정**

- 특허 출원이 가능한 수준의 결과물임에도, **회사 정책상 영업비밀로 관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보상 有**

○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대우(승진 등)를 강화

- 타사로 이직한 인력에 대해서까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음

○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全 임직원 대상 보안교육을 정기적**(반기 또는 분기별)**으로 실시** 중임

4. 중소기업 인터뷰

□ 면담 개요

○ **(일시)** '21. 8. 6(금)

○ **(인터뷰 대상)** OO사 전무이사 등 3명

□ 주요 내용

① 기술개발 성과의 보호방법

○ 보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술은 대부분 '특허'로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은 거의 없음**

- 거래처 등 **대외에 자사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를 선호**

- 영업비밀 관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여력 부족

②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자체 노력 현황

○ 출입통제, 문서등급 부여, 전산보안시스템 등 **물리적 관리 체계를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음**

- 다만, 서버 접속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음

○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인력·예산을 두고있지 않으며**, 전무이사가 관련 업무까지 총괄 수행

○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 관련 **별도 직무교육을 하지 않으나**, 회사기밀 유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주의를 하고 있음

③ 영업비밀 유출 피해경험 및 대응

○ 과거 내부직원이 **고객사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정황이 있었으나, **고객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미대응**